

연구보고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책임연구원 : 길은배(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임영식(중앙대학교 · 교수)

이용교(광주대학교 · 교수)

청 소 년 위 원 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정책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 문제의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장애·북한이탈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청소년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 실태, 그리고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둘째, 전국 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에 관한 의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셋째, 소수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청소년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 자료를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분야의 산·학·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5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조사도구 개발, 조사 수행,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수시로 연구자문을 받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를 수립하기 위하여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3) 설문지 개발을 위한 청소년 대상의 pretest 실시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부딪치는 인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일반 청소년 및 동아리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pretest하였다.

4) 설문조사

전국 중·고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 분석은 첫 번째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의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aired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영역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상대적 크기의 순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생활영역별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 혹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로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문항별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 경험도와 만연도의 각 평정치별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의 경험도 측정 문항별로 점수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분류된 하위집단별 차이 검증을 t검증 혹은 oneway ANOVA로 실시하였다.

5)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은 3집단(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의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즉 가정, 지역사회, 학교(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소수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우선 집단 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집단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많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II.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 그리고 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할 수 있다는 국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 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후의 보루인 국가조차도 청소년을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폭언, 차별 등은 흔히 자녀교육 혹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청소년 자녀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기에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폭언이나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최근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교사의 폭언, 체벌, 차별 등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한국의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실에서는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권을 배려하는 행동양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먼저 습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

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주류 청소년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근로 청소년의 인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행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을 공식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절실한 권리인 학습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직업선택권, 직업재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 주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언어 등으로 주변 청소년에게 쉽게 따돌림을 당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인권을 경시해 온 관습까지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사회적으로 성인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의 성숙 정도에 상응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소외 계층은 당사자의 권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변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소외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그 개선점을 조사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Ⅲ. 청소년인권 실태 의식 조사

이 장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전국 중고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가정생활에서 측정된 14가지 인권침해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내용은 부모님이 성적을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과,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30%가 이러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성적차별의 경우 전체의 64%, 아침식사의 경우 전체의 51%)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위는 부모님 눈치가 보여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 없는 것으로 전체의 20%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으며, 역시 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전체의 35%)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 교급, SES,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양친가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권 침해 내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침해를 받고 있었다. 성적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와 차별 받는 것,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는 것,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것,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것, 친구에 대한 간섭, 두발 간섭 등의 경험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못하는 고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성적과 관련하여 차별과 차별을 받고,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는 인권침해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들 간에도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인문고생은 실업고생 혹은 중학생에 비해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거나, 친구 관련 사생활에 대해 부모의 간섭을 받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실업고생은 아침식사를 못하거나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못 받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일을 많이 하는 고충을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SES별로는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못 산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나 혹은 중간보다 잘 산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도 청소년의 가정생활 영역 인권침해 경험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의 학력인 경우보다 집에서 부모님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친구와 관련된 사생활의 간섭을 받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반면에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거나,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여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못 내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일을 많이 하는 고충은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양친가족의 청소년들과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영역의 인권침해 내용 중에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것,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부모님께서 제때 못 주시는 것,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일을 많이 하는 인권침해 경험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 부모 가족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2.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지역사회생활에서 측정된 15가지 인권침해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은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58%가 경험하고 있었으며, 63%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52%가 경험하고 있었으며, 53%가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 참여 때 부모나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눈치가 보여 빈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것과 같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45%~48%이었다. 그 다음은 대중매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처음 만나는 성인이 반말하는 것,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 아르바이트시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을 30%~39%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과 관련된 인권침해는 20%~27%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사회생활 영역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성, 교급, SES,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사회생활 인권침해 내용에서 교급과 지역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교내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에서 교급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침해 경험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고민이 있을 때 상담기관이 없는 것, 저녁시간 외출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받는 것과 같은 고충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부족, 지역사회 동아리활동 참여시 부모나 학교로부터의 제재, 처음 만나는 성인이 반말을 하는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의 부족, 저녁시간 외출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아르바이트시 노동시간 및 조건에 대한 불이익, 아르바이트 초과수당 미지급, 음란·스팸메일을 받는 것,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 보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한편,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과 같은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SES별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못하는 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이나 중간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집단차이를 보인 인권침해의 내용은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 및 공간의 부족, 지역사회 동아리활동 참여시 부모나 학교로부터의 제재,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이 없는 것, 아르바이트시 노동시간과 조건에 대한 불이익, 아르바이트 초과수당 미지급,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받는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거주 청소년이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 등 학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고,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이 더 높았다. 반면에 광역시나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이 없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3.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학교생활 영역에서 측정된 20가지 인권침해 문항 중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인권침해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내용은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교실과 화장실에서 갈아 입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81%가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겨

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휴식이나 이동시간에 핸드폰 이용시 선생님께 혼나거나 압수, 가격에 비해 급식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의 순으로 50%~62%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간부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를 30%~49%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소지품 검사,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차별, 선생님의 체벌이나 폭언,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의 권리가 없는 것, 성적계시와 같은 인권침해를 10%~20% 내외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성, 교급, SES, 지역, 성적,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차를 보이는 인권침해 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두발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외모 때문에 놀림 받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 급식 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체벌이나 선생님의 폭언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성적을 이유로 차별 당한 것, 급식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않은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탈의실이 없는 것, 두발규제, 교복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소지품 검사 받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체벌과 같은 고충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중학생은 측정된 거의 모든 인권침해 문항에서 고등학생보다 경험도가 낮았지만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정도는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 청소년들이 화장실 온수, 양호실, 냉난방, 급식 등 학교 시설관련 불편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경험도와 학교체벌관련, 그리고 성적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관련 인권침해 경험도가 중류나 상류층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낮았다. 이를테면 서울 거주 청소년들은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교시설관련, 복장관련, 그리고 성적으로 인한 체벌이나 자율학습의 선택권 등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낮았다. 한편,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내용에 있어서 서울 거주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험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관련 인권침해의 경험도가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대체로 높다.

학교성적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들은 성적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상위 40% 이하의 청소년들이 그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성적 공개로 인한 수치심,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의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다르지 않았으나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몇 가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내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 정도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IV.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4장에서는 소수 청소년(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 청소년들의 가정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예를 들어,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 경제적 문제, 본인의 가출 등)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또한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상처나 고민에 대해서도 알아주기를 원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였다. 또 이들은 직장생활(아르바이트)을 하면서 계약 조건과 다른 일을 하거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욕설과 함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장애 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과 같이 가정에서, 학교 성적이나 공부를 이유로 형제나 또래와 비교당하고 차별을 받았으며,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도 부모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모로부터 욕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동정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은 지역사회의 시설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교사나 친구를 포함)으로부터 무시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대중매체 역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성적이나 공부 문제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야단이나 꾸중을 들었지만 심할 정도의 폭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모간의 사이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부모가 서로 다투게 될 경우 자녀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휴식 및 여가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 등 질적 측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무시나 차별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에 전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관계에 있다. 학교의 0교시 수업이 계속되는 한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가출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청소년인권의 개념을 상위에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생활영역과 환경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배치하는 구조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몇 가지 주요 사안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청소년의 학력, 또는 대입시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성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가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되기 보다는 주변적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욱 문제이다.

셋째, ‘인권’은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누구나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갖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태도 및 결정 여하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이 좌우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는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인들이 시혜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소수 청소년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 의한 인권침해를 종종 경험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조정, 두발자유, 0교시 폐지 등과 같은 사안은 이 사회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또래집단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수 청소년을 위한 인권 신장 노력과 함께 모든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불편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인권 또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 또는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접근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그리고 소수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성인 간의 세대 이해(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 통신분야의 청소년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원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내의 청소년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 자원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일곱째, 소수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 소수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
-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소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의식 증진
- 소수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소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및 보완
-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의 실시
- 소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긍정적인 명칭으로 전환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9
3. 연구의 방법	14
II.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19
1.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	21
2.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38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48
III. 청소년인권 실태 의식 조사	53
1. 조사 개요	55
2. 조사 방법	60
3. 조사 결과 및 해석	61
4. 조사 결과 요약	125
5. 시사점	131
IV.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135
1. 조사의 개요	137
2. 조사의 결과	138
3. 요약 및 시사점	179
V. 결론 및 정책 제언	183
1. 결 론	185
2. 정책 제언	189
3.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	193
참고문헌	202
부 록	205

표 목차

<표 I-1>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12
<표 I-2> 성별, 도시 규모별, 권역별 모집단 인원 및 비율	16
<표 I-3> 성별, 도시 규모별, 권역별 표본 집단	16
<표 III-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56
<표 III-2> 조사영역 및 조사 항목	58
<표 III-3> 인권침해 영역별 집단차 분석에서 적용된 조사대상의 하위집단 변인	61
<표 III-4> 하위집단 변인의 범주	61
<표 III-5>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	62
<표 III-6>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62
<표 III-7> 지역사회생활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63
<표 III-8> 학교생활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64
<표 III-9-1>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권 침해 경험도의 집단차	65
<표 III-9-2> 부모님이 성적을 비교하는 경험의 집단차	66
<표 III-9-3>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 경험도의 집단차	67
<표 III-9-4> 성적으로 인한 부모님의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68
<표 III-9-5> 집에서 놀 때 부모님 눈치 경험도의 집단차	69
<표 III-9-6> 부모님에 의한 폭언 경험도의 집단차	70
<표 III-9-7> 부모님이 성적 및 집안 환경을 친구 사귀는 조건으로 고려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72
<표 III-9-8>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간섭 경험도의 집단차	73
<표 III-9-9> 등교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험도의 집단차	75
<표 III-9-10> 부모님간의 불화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도의 집단차	77
<표 III-9-11>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78
<표 III-9-12> 부모님이 내 용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80
<표 III-9-13> 힘든 집안일 및 다른 일 경험도의 집단차	81

<표 III-10-1> 청소년 관련 시설과 공간 부족의 어려움에 있어서의 집단차	83
<표 III-10-2>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의 제재에 있어서 집단차	84
<표 III-10-3> 처음 만나는 성인들에 의해 반말을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집단차	85
<표 III-10-4>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도에 따른 집단차	86
<표 III-10-5>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정도의 집단차	87
<표 III-10-6>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경험하는 정도의 집단차	88
<표 III-10-7> 방과 후 다니는 학원으로 인한 여가생활 지장 경험도의 집단차	90
<표 III-10-8>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기관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91
<표 III-10-9> 방과 후 저녁 시간 외출에 대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험도의 집단차	92
<표 III-10-10> 대중교통 수단에서 빈자리에 앉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경험도의 집단차	93
<표 III-10-11> 아르바이트시 노동조건의 불이익 경험도의 집단차	94
<표 III-10-12> 아르바이트시 초과수당 미지급 경험도의 집단차	95
<표 III-10-13> 음란물스팸메일의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96
<표 III-10-14> 부정적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생각의 집단차	97
<표 III-10-15> 유해업소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출입시킨 경험도의 집단차	98
<표 III-11-1> 겨울철 온수 미공급 경험도의 집단차	100
<표 III-11-2> 양호실의 자유로운 이용 경험도의 집단차	101
<표 III-11-3> 교실 냉난방 시설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103
<표 III-11-4> 체육복을 교실에서 갈아 입은 경험도의 집단차	104
<표 III-11-5> 학교의 두발 규제 경험도의 집단차	106
<표 III-11-6> 교복선택의 폭의 제한 경험도의 집단차	107
<표 III-11-7> 보충수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109
<표 III-11-8> 핸드폰 압수 경험도의 집단차	110

<표 Ⅲ-11-9> 가방 및 소지품 검사 경험도의 집단차	111
<표 Ⅲ-11-10> 징계나 처벌시 입장 변호 기회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112
<표 Ⅲ-11-11> 외모로 인한 놀림 경험도의 집단차	113
<표 Ⅲ-11-12> 성적관련 차별 경험도의 집단차	115
<표 Ⅲ-11-13> 성적관련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116
<표 Ⅲ-11-14>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117
<표 Ⅲ-11-15> 교사의 인신공격성 폭언 경험도의 집단차	118
<표 Ⅲ-11-16> 학교동아리활동 권리침해 경험도의 집단차	120
<표 Ⅲ-11-17> 학교급식 불편 경험도의 집단차	121
<표 Ⅲ-11-18> 상담선생님 부족 경험도의 집단차	122
<표 Ⅲ-11-19> 성적공개 경험도의 집단차	123
<표 Ⅲ-11-20> 학교임원 선출시 성적 작용 경험도의 집단차	12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은 복지권, 보호받을 권리, 적극적인 의사 표명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곧 모든 청소년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 폭력과 공포,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은 법률상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서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이 미미한 경험을 학습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험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분야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 이념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정책이 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권리 신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더욱이, 우리사회의 수많은 인권단체, 청소년단체, NGO들도 청소년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복지지원 활동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담은 제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 교육시스템 개선 등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현재 이의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인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인권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재연 외, 1997 ; 성정숙, 1998).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권리의 필요성과 보장수준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로 청소년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보장 수준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은 사생활의 자유, 교사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표현의 자유, 참여권, 문화생활권 그리고 적법절차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숙, 1998 : 86-86).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복지권 등과 같은 본래적 인권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들 보다 언어, 차별 등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직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정희욱·김은배·김정래, 2000 : 114-116). 따라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사회적 노력

이 이행되더라도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실체로 청소년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적 가치, 관습 등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은 그 사회의 역사,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인권협약’, ‘의견표명권’ 등에 대한 지식이 낮게 나타나거나, 참정권, 복지권의 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사회문화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와 관련한 공간속에서 부딪치고 있는 인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47-79 참조).

첫째, 학생회 등 학교내 자치활동이 매우 미흡하여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다. 학생회와 자치활동의 현주소는 심각한 실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 자치는 선언에 불과¹⁾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회가 학칙 제·개정 등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자치가 담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교칙의 민주적 제·개정 절차가 미흡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청소년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아직까지 학생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며, 학생의 자치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학교장 등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해진 학교의 각종 규칙은 학생 생활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칙에 대한 학생 청소년의 불만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근본적 봉쇄, 선도·징계규정, 용의복장, 외부활동 규제, 비민주적인 징계의 절차와 기준, 징계 경력 학생에 대한 포상 제한, 일방적인 학생회칙, 학생대표 선출의 기준과 방식 등 전반적인 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셋째, 0교시와 강제자율학습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약 80%가까이 되고 있으나, 0교시의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6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부정하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은 학생 청소년들이 아침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학생자치는 권장 사항이며 교육과정일 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사를 거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학생 청소년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2003년부터 적용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기조이다. 10학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재량활동, 고등학교의 선택교과 운영으로 학생의 교과 선택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이나, 교과 선택권을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외의 시간에도 도입해야 하는 한계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단위에 선택 권한이 주어진 반면, 단위 학교의 학생들에게 권한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택교과의 개념과 적용은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의 급수시설, 학교급식 등 학교시설·환경제도 개선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책걸상 보급 등이 미진한 것은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학생 청소년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소수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먼저 장애 청소년의 주요 인권 제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용교, 2004).

장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장애인 관련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인권이 매우 낮게 취급되었기에 최근 점진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그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청소년의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학습능력이 다르므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권이 지원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는 장애학생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둘째, 장애 청소년의 이동권이 매우 취약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은 학교에서조차도 이동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사를 찾아보기 힘들며, TV 등의 자막방송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다. 넷째, 장애 청소년의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상황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소수 집단인 장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인권문제 역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연소자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지능발달의 장애를 초래하고, 인격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연소자의 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를 위한 보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 청소년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국가는 고령자와 기혼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청소년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최근 청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이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 청소년의 대표적인 인권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합리적으로 일할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3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요구되며, 여자와 소년에 대한 각종 보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둘째, 근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급료 3,000원 내외에서 일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야업과 휴일근로를 당연스럽게 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18세 미만의 근로 청소년은 사실상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착취적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 셋째, 근로 청소년이 성적 착취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고 명시하고, 동법 제63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티켓다방, 단란주점, 변태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이용교, 2004).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소수집단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실태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5년 4월 기준으로 6,304명이다. 이들 중에서 6세부터 20세까지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숫자는 약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가족을 동반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44%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학령기 청소년의 수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이 국내 입국 과정 및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들이 부딪치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남한사회의 부적응 현상에 기인한 바 크다. 예로 남북한 교육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학업 부적응, 놀이문화의 부적응,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몰이해에 따른 경제활동의 수동성 및 정착금의 관리 실패, 남한사회의 편견과 가치관 및 언어적 이질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의 스트레스 전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증폭 등과 연동된 인권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정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인권 문제는 연령, 성별, 가족유무, 진학여부 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되고 있다. 동시에 가족의 구성 형태도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화되고 있어 이들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인권 관련 제도 및 불합리한 규제와 소외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 등이 청소년의 인권 제한 및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혹은 사회구성원 의식의 내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예컨대, 반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권위주의, 가부장제에 근거한 전통적인 수직적 인간관계 규범 등도 청소년의 인권 제한 및 유예의 정당화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영역 속에서 인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 여건은 청소년인권의 제한 및 침해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길은배, 2003 : 94-95).

따라서 이 정책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 문제의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장애·북한이탈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청소년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제한의 논리, 그리고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

다. 둘째, 전국 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에 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소수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를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분류틀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나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문제도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인권의 어떤 측면을 주로 살펴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함께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내용은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것이기에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매우 쉽게 인식하는 인권 관련 사항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차별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사안이다. 성차별, 인종차별, 연령차별, 장애여부에 의한 차별 등은 인권의 기본정신에

비취볼 때 매우 고질적인 사안이다. 체벌도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은 생활지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적 행동이라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하는 일도 심각한 논란거리이다. 규제는 청소년의 교육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나친 규제는 청소년의 자유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주제가 청소년의 인권이란 담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생활영역별로 어떤 인권을 살펴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각 생활영역별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 소수 청소년의 인권 문제와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권의 침해를 받기 쉬운 소수집단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수 청소년은 주류집단에서 벗어난 모든 청소년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인권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들의 인권문제는 주류 청소년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특정 집단의 인권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 청소년인권 실태 의식 조사

전국 중고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2,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전국 중고 청소년들이 평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생활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척도는 5점으로 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한다”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각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 -1>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영역	조사 내용
가정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 할 때 나의 학력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시고 차별하신다
	부모님은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신다
	부모님은 성적이 나쁘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신다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가 없다
	부모님은 나에게 참기 어려운 폭언(고함, 욕설 등)을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을 사귄 때 상대 친구의 성적 및 집안 환경 등을 주요한 조건으로 고려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
	부모님은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나의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등교 시간에 쫓기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부모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것은 나의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안 형편상 부모님께서 학교에 내야할 돈을 제때 주지 못 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 용돈을 보관하고 계시면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신다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학교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을 씻거나 세면을 하기가 불편하다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갈아 입는다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교복 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교복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다
	수업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압수당한다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자주 받는다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

영역	조사내용
학 교	학교에서 성적을 이유로 차별이 심하다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주 체벌을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을 때 손으로 나의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린다
	선생님은 자주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신다
	학교내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학교내 급식은 가격에 비하여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상담할 선생님이 없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학급 또는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학급 임원 및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 회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이 지역사회에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들은 대부분 나에게 반말을 한다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차별이 더 심하다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더 심하다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방과 후에 학원을 여러 곳 다니므로 휴식 및 여가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평소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할 기관이 없다
	방과 후 저녁 시간에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 대한 양보 등의 문제로 주변의 눈치가 보여 빈자리가 생겨도 앉기가 부담스럽다
	아르바이트시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하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약속된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받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뉴스, 드라마 등)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유해업소 주인은 청소년인줄 알면서 유해업소(술집, 비디오감상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 안되는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

3)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즉 가정, 지역사회, 학교(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소수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그리고 소수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리하면 ① 청소년-성인 간의 세대 이해(공감) 프로그램 개발, ②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 개발·보급, ③ 정보 통신분야의 청소년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강화, ④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원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리체계 마련, ⑤ 학교 내의 청소년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성·운영, ⑥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⑥ 소수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차원의 다양한 노력 추진 등이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청소년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를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분야의 산·학·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5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조사도구 개발, 조사 수행,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수시로 연구자문을 받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를 수립하기 위하여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3) 설문지 개발을 위한 청소년 대상의 pretest 실시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부딪치는 인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일반 청소년 및 동아리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pretest하였다.

4) 설문조사

전국 중고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 분석은 첫 번째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의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aired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영역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상대적 크기의 순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생활영역별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 혹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로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문항별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 경험도와 만연도의 각 평정치별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의 경험도 측정 문항별로 점수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분류된 하위집단별 차이 검증을 t검증 혹은 oneway ANOVA로 실시하였다.

<표 I-2> 성별, 도시 규모별, 권역별 모집단 인원 및 비율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국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학교구분별	1,933,543	53%	1,232,010	33%	514,550	14%	3,680,103	100%	
성별	남학생	1,022,950	53%	644,719	52%	273,859	53%	1,941,528	53%
	여학생	910,593	47%	587,291	48%	240,691	47%	1,738,575	47%
	합 계	1,933,543	100%	1,232,010	100%	514,550	100%	3,680,103	100%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별광역시)	918,595	48%	635,097	52%	214,350	42%	1,768,042	48%
	시·군	1,014,948	52%	596,913	48%	300,200	58%	1,912,061	52%
	합 계	1,933,543	100%	1,232,010	100%	514,550	100%	3,680,103	100%
권역별	경인권	947,957	49%	616,363	50%	229,225	45%	1,793,545	49%
	중부권	297,860	15%	186,933	15%	91,858	18%	576,651	16%
	호남권	282,777	15%	165,998	13%	90,926	18%	539,701	15%
	영남권	404,949	21%	262,716	21%	102,541	20%	770,206	21%
	합 계	1,933,543	100%	1,232,010	100%	514,550	100%	3,680,103	100%

※ 참고: 2004년 교육통계연감.

<표 I-3> 성별, 도시 규모별, 권역별 표본집단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국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학교구분별	1,643	53%	1,023	33%	434	14%	3,100	100%	
성별	남학생	871	53%	532	52%	230	53%	1,633	53%
	여학생	772	47%	491	48%	204	47%	1,467	47%
	합 계	1,643	100%	1,023	100%	434	100%	3,100	100%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별광역시)	789	48%	532	52%	182	42%	1,503	48%
	시·군	854	52%	491	48%	252	58%	1,597	52%
	합 계	1,643	100%	1,023	100%	434	100%	3,100	100%
권역별	경인권	805	49%	512	50%	191	44%	1,508	49%
	중부권	246	15%	153	15%	78	18%	477	16%
	호남권	246	15%	143	14%	78	18%	467	15%
	영남권	346	21%	215	21%	87	20%	648	21%
	합 계	1,643	100%	1,023	100%	434	100%	3,100	100%

5)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은 3집단(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의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즉 가정, 지역사회, 학교(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소수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우선 집단 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집단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많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II.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1.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
2.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II.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 그리고 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를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분류틀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나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문제도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인권의 어떤 측면을 주로 살펴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함께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내용은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것이기

에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매우 쉽게 인식하는 인권관련 사항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차별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사안이다. 성차별, 인종차별, 연령차별, 장애여부에 의한 차별 등은 인권의 기본정신에 비취볼 때 매우 고질적인 사안이다. 체벌도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은 생활 지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적 행동이라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하는 일도 심각한 논란거리이다. 규제는 청소년의 교육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나친 규제는 청소년의 자유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주제가 청소년의 인권이란 담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생활영역별로 어떤 인권을 살펴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각 생활영역별로 쟁점을 논의한다.

1)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쟁점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고전적인 소재는 욕설, 체벌 등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주희중 등(1998)이 연구한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은 중고등학생에게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욕먹은 경험”, “지난 1년간 가정에서 체벌을 받아본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욕먹은 경험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있다는 청소년이 83.2%였다. 성별차이는 별로 없지만, 학교종류별로 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이 8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학교로 83.9%, 인문계 고등학생이 81.4%이었다(주희중 외, 1998: 406).

전체 청소년의 4/5이상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욕설을 당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가장 많이 듣는 욕설은 “멍청하다, 바보같다, 이 웬수야, 꼴도 보기 싫다, 이 꼴치 덩어리야, 학교 그만뛰라, 집에서 나가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393).

청소년이 부모님께 들은 욕설 중에서 가장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말은 중복응답으로 볼 때, “나가 죽어라”(34.9%)이고, 그 다음은 “넌 내 자식이 아니

니 엄마 아빠라고 하지도 마라”(28.1%), “집에서 나가라”(22.6%), “꼴도 보기 싫다”(21.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14).

대체로 개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욕설(명칭하다, 이 바보야 등)보다는 저주하거나(나가 죽어라)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욕설(엄마 아빠라고 하지도 마라)에 더 모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청소년이 가장 흔히 겪는 또 하나의 인권침해는 체벌이다. 주희중 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5.2%이다. 성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중학생(45.6%) 보다는 실업고생(54.8%)과 인문고생(65.3%)이 더 체벌을 받았다(주희중 외, 1998: 415).

가정에서 주로 체벌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가장 많고(52.4%) 그 다음은 아버지(32.4%), 형제(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주로 체벌을 하는 사람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딸은 주로 어머니(61.6%)가 체벌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각각 41.6%, 42.1%)가 체벌을 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은 어머니(59.2%)가 체벌하지만,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은 주로 아버지(각각 41.2%, 45.2%)가 체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15).

가정에서 체벌을 받는 주된 이유(중복응답)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81.5%), “불량 행동으로 인해”(36.2%), “형제끼리 싸워서”(31.4%), “성적 부진으로 인해”(2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20).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욕설을 경험한 비율과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벌을 받은 경험은 욕설의 경험율보다 28.0%가 낮지만, 성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인문고생이 실업고생이나 중학생보다 더 체벌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욕설에서는 인문고생의 경험율이 가장 낮았는데, 체벌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성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모의 체벌이 더 빈번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1년간 체벌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37.4%나 되었다. 신체적 피해 정도는 “다행히 외상이 없거

나”(20.0%), “외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72.0%)가 주류이지만,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6.7%는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외상이 있었다고 하고, 0.7%는 입원할 정도였다고 한다.

요약하면,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 의한 체벌을 받은 자녀는 55.2%이고, 체벌을 당한 청소년의 37.4%는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7.4%는 병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입원을 경험하였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로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훈육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동학대 혹은,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은 “전혀 불필요”(16.5%) 하거나, “다소 불필요”(27.2%) 하다고 인식한 청소년이 “매우 필요”(2.5%) 하거나 “다소 필요하다”(30.9%)는 의견보다는 훨씬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주희중 외, 1998: 420).

가정에서 주로 부모에게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이 55.2%인데,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43.7%는 체벌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을 받고 청소년이 가장 자주 느낀 생각은 “마구 대들고 싶다, 화가 난다, 서럽고 슬프다,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억울하고 분하다, 죽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29).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이유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어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체벌을 받은 자녀가 “화가 나고, 서럽고, 분하며, 심지어 죽어버리거나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은 타인의 신체의 자유는 누구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를 직접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식해야 하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비록 자녀의 잘못을 고치고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하거나 체벌을 하더라도 이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만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욕설이나 체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김영지 등(2003)은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면서, ‘청소년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김영지 등은 “가정에서 청소년 권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대표하는 17개 항목을 조사하였다(김영지 외, 2003: 153).

생존권의 항목은 2가지이었는데,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한 청소년”은 3.6%이고, “나의 부모는 내가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며 건강을 잘 돌보아 주신다”는 응답이 91.7%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김영지 외, 2003: 159~160).

보호권의 항목은 7가지이었다.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는 청소년이 전체의 19.1%이고, “일부 청소년은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고”(6.1%),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으며”(14.8%), 심지어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2.9%),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36.0%), “집에서 무시당하는 편이며”(8.8%), “집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10.2%)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3: 161~163).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는 생존권과 비교할 때, 부모로부터 더 자주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벌과 폭언 그리고 차별(편애)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가장 흔히 느끼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다.

발달권의 항목은 3가지이었는데, “부모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 주신다”는 응답이 86.6%이고, “부모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에 82.1%가 동의하며, “가정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 받는다”에 77.5%가 동의했다(김영지 외, 2003: 163~164).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휴식 여가 그리고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은 학습과 함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세대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참여권의 항목은 5가지이었다.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14.0%이고,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66.6%), “나의 부모는 평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80.7%), “나의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77.9%) 등이고,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청소년이 79.1%였다.

가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은 비교적 존중받고 있지만,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청소년의 입장은 별로 고려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14.0%나 된다는 사실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다.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쉽게 침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부장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나머지 가족은 가장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질서는 최근 많이 퇴색되었지만, 아직도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문화는 온존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문화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하다.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는 가부장적 가족관을 갖고 있고 자녀는 민주적 가족관을 갖기에 자녀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잘 되어라” 는 뜻에서 꾸중을 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는 어른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부모와 스스로의 인격체를 강조하는 자녀는 작은 체벌도 큰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가부장 문화는 성차별을 당연하게 인식하기에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양육하거나 처우할 수도 있다. 소자녀화가 확산되면서 가정 내에서 성차별 문화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부모는 청소년 자녀를 키울 때 성별로 다

른 처우를 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심리적으로 다르기에 각 성별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한 양육방식이지만, 자칫 여성인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덜 주거나 남성인 자녀에게 더 많은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사자인 자녀에게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다.

가부장 문화는 가족 내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차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많은 전통사회에서는 맏이, 중간, 막내 등이 중요한 신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맏이면서 동시에 막내인 경우도 많고, 맏이기에 혹은 막내이기에 특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에 의한 자녀의 차별적인 양육이나 처우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는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자녀의 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모도 생각만큼 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습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유유서를 존중하는 생활문화는 미풍양속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생각과 생활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가정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인 자녀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는 가정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소년도 자신의 생각과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다른 생활양식을 배웠고 평생 동안 가부장 문화에서 살아온 부모를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작은 차이를 큰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상호 배려하는 생활양식을 꿈꾸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2)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쟁점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고전적인 소재는 욕설, 체벌, 학교폭력 등이다. 주희중 등(1998)이 연구한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은 중·고등학생에게 지난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게 받은 욕설,

체벌, 학교폭력의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선생님께 잘못했을 때 욕먹은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학생은 63.2%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욕설을 들은 경험(83.2%)에 비교하여 20.0%정도 낮지만, 전체 중·고등학생의 3/5이상이 한번 이상 선생님께 욕설을 들었다. 성별로는 남학생(73.7%)이 여학생(53.5%)보다 욕설을 많이 듣고, 중학생(58.8%)보다는 인문고생(64.3%)과 실업고생(78.5%)이 욕설을 더 많은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46).

학생들이 교과로부터 자주 듣는 욕설은 “멍청하다, 바보같다, 이 꼴치덩어리야, 학교 그만 뒤라” 등과 같이 주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주희중 외, 1998: 451).

학습장면에서 교사가 학생을 좀 더 열심히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이 나올 수 있지만, 욕설을 듣는 당사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욕설(중복응답)은 “학교 그만 뒤라(43.6%), 나가 죽어라(34.8%), 멍청하다(31.3%), 꼴도 보기 싫다(30.6%), 바보같다(23.1%)” 등과 같이 주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야단치거나 저주하는 욕설(나가 죽어라)이었다(주희중 외, 1998: 452).

비슷한 욕설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와 교사가 학생에게 할 때, 청소년이 인식하는 모욕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은 부모가 하는 욕설보다는 교사가 하는 욕설에 훨씬 민감하다. 청소년이 가장 모욕을 느끼는 욕설은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 그만 뒤라”(43.6%)인데, 자녀가 가장 모욕적인 부모의 욕설인 “나가 죽어라”(34.9%)는 것에 비교하여 8.7%가 높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 그만 뒤라”는 욕설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욕설에 대한 모욕(22.6%)과 비교할 때에는 모욕감이 11.0%나 더 높다. 욕설 그 자체도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교사의 욕설에 대해서 학생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하여 교사는 언어 사용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논의할 때 가장 주목받는 소재는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이다. 주희중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3.6%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학생(80.0%)보다 남학생(87.4%)이 높고, 학교 종류별로 보면 중학생의 체벌 경험율(78.8%)보다 실업고학생과 인문고학생의 경험율(각각 83.9% 88.5%)이 높다(주희중 외, 1998: 456).

같은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5.2%인데,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학생이 83.6%로 28.4%나 높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학생들이 주로 받는 체벌(중복응답)은 “회초리로 맞았다”(62.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손으로 맞았다”(53.9%), “굵은 막대기로 맞았다”(44.3%), “몽둥이로 맞았다”(42.1%), “주먹으로 맞았다”(15.8%), “발로 차였다”(14.4%) 등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56).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교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굵은 막대기나 몽둥이로 맞은 학생도 전체의 2/5를 넘고,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에 대해서 학생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벌은 전혀 불필요”(17.8%)하거나 “다소 불필요”(39.8%)하다고 인식하고, “매우 필요”(1.2%)하거나 “다소 필요”(31.6%)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보다 불필요를 주장하는 비율이 19.8%나 높다(주희중 외, 1998: 456). 특히, 자신이 받은 학교체벌에 대해서는 “전혀 불필요”(28.%)하거나 “다소 불필요”(38.0%)하다고 인식하고, “매우 필요”(0.5%)하거나 “다소 필요”(19.5%)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소수이었다. 체벌을 직접 당한 학생의 66.0%가 체벌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왜 체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혹,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체벌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체벌을 학

교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칫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은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년간 학교체벌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52.3%이고, 그 피해 정도는 “다행히 외상은 없었다”(19.7%), “외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73.9%)고 하지만, 일부 학생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외상이 있었다”(4.9%)와 “입원할 정도였다”(1.5%)고 했다(주희중 외, 1998: 462~463).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이지만, 지난 1년 동안 부모에 의한 체벌로 신체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37.4%이었다. 반면, 교사에 의한 체벌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52.3%라는 것은 교사의 체벌 강도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체벌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생의 1.5%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고 한 것은 부모에 의한 체벌로 입원한 비율(0.7%)의 두 배에 해당된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 주변에서 다른 청소년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주희중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 의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16.9%이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에 폭력의 종류(중복응답)는 “얼굴을 맞았다”(54.3%), “뺨을 맞았다”(48.3%), “가슴 옆구리 등을 맞았다”(43.0%), “머리를 맞았다”(35.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중 외, 1998: 471).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이 주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린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폭력은 주로 얼굴, 뺨, 가슴 등 신체의 앞면이 많았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시간대(중복응답)는 “학교에 있는 동안”(37.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하교 중에”(29.1%), “방과후 밤에”(29.1%)이다. 폭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실안”(19.2%), “주책가 골목길”(19.2%), “학교근처 골목길”(13.2%), “학교 화장실”(10.6%),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10.6%) 등으로 주로 학교 교실과 학교 내 혹은, 그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같은 학교 선배”(34.4%), “같은 반 학생”(11.9%), “다른 학교 선배”(11.9%), “다른 반 학생”(11.3%)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주희중 외, 1998: 474~475).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은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욕설이지만, 선배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도 적지 않다. 다른 청소년에 의한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폭력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집단따돌림은 집단 구성원의 다수가 집단의 한 사람 혹은 소수를 집중적으로 따돌림 하고, 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김영지 등(2003)은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권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대표하는 2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김영지 외, 2003: 153).

생존권에 대한 조사항목은 2가지로 “안전사고로부터 나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에 51.8%가 동의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 상태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50.7%가 동의하여 생존권에 대한 학교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김영지 외, 2003: 168~170).

보호권에 대한 조사항목은 7가지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고(32.0%), 집이 가난한 학생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으며(10.4%),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33.8%),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며(57.8%),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고(43.5%), 학교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며(12.4%),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16.3%)이라고 하였다(김영지 외, 2003: 170~174).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학교에서는 성차별이 적지 않고,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특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상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경

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6.1%)과 비교할 때, 학교에서 체벌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32.0%)도 앞의 주희중 등의 조사와 일치한다.

발달권에 대한 조사항목은 3가지로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33.2%), “일부 학교에서만 다양한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며”(51.8%), “장애 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경우”(29.1%)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3: 174~176).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학생의 발달권을 키우려는 것인데, 현재의 교육여건이 청소년이 발달권을 충분히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다.

참여권에 대한 조사항목은 8가지이었다.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학생은 41.3%이고,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학생은 32.3%에 불과하다. “학생은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79.1%), “일부 학교에서만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60.4%).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46.2%),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62.7%),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35.1%),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학생”은 40.9%에 불과하다. 많은 학교가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제한하며, 심지어 징계를 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 동안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청소년인권운동의 핵심적인 쟁점은 체벌반대, 0교시폐지, 두발자유, 선거권연령 인하 등으로 선거권연령을 제외한 모든 인권운동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인권운동은 “무엇을 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 운동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 달라”는 소극적인 요구 운동이었다. 즉, 체벌금지는 “체벌을 하지

말라”이고, 0교지 폐지운동은 “이른 아침에 학교를 등교시키지 말라”는 요구이며, 두발자유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운동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학교당국이나 교사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대체로 신체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볼 때, 청소년의 요구는 주로 보호받을 권리나 참여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인 교사와 청소년인 학생 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삶의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다. 교사는 임금과 부모가 신하와 자녀에게 군림할 수 있듯이 학생을 권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학생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이고, 가정에서 조차 자녀는 상당히 존중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규제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별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와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게 될 때, 마음으로부터 깊이 공감을 못하기에 반발을 하게 된다. 교사는 회초리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교육관으로 학생을 가르치려 하고, 학생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학교에서 교사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이 없다. 가정에서 기본생활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체벌 등을 통한 훈육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지만, 학생은 집에서조차 맞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체벌을 받는 것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체벌에 한정되지 않고,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이어진다. 폭언이나 체벌을 한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학생은 그 사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학생인권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이 주장하는 인권의 쟁점은 단순히 보호받을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학생회 활동의 자유와 학생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 선거권 연령의 인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보호권을 보장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감을 표하는 교사나 학교운영자 조차도 청소년의 참여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점이 현재와 향후 청소년인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등은 당사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아동도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비하여 아직도 성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신하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혹은 청소년과 성인의 인권은 단순히 인식의 차이를 벗어나서 법과 제도의 차이로 이어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장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생활규정 등은 학생의 자발적인 활동을 교육적인 이유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의 규정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의식과 생활양식은 크게 향상되었는데, 교사나 학교당국의 인권의식은 지체 현상이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교생활규정」이다.

인권의 시각에서 볼 때, 낡은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은 대폭 개선되어야만 학생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때 교사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다는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과 폭언이 사라질 때, 교사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쟁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쟁점은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모든 장면에서의 청소년인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상황의 인권을 포괄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은 전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은 전체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굳이 청소년인권 문제를 지역사회와 가정 및 학교로 분류하여 본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겪는 인권 실태와 문제 중에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상업화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은 자칫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 물품, 매체,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주희중 등의 연구에 따르면, 흔히 중·고등학생은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경험하기 쉬운데 “주택가 골목길”(19.2%), “학교근처 골목길”(13.2%),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10.6%) 등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주희중 외, 1998: 474). 중·고등학생들은 교실 안, 학교 화장실 등 학교 내에서도 폭력을 당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는 셈이다.

청소년에게 명백하게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여 결국 청소년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영지 등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22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생존권에 대한 조사 항목은 2가지였는데, “청소년은 건강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는 비교적 양호하고(81.6%),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도 비교적 존중받고 있다(75.2%)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3: 182~183).

보호권에 대한 조사 항목은 7가지였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55.2%에 불과하고,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54.3%),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45.3%)는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54.6%), “신체·정서·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 시설, 장소 등으로부

더 보호받을 권리”(55.0%),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나 유해한 노동,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53.2%), “남녀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50.9%)도 비교적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3: 183~187). 청소년은 사회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3/4이상이었지만, 각종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권에 대한 조사 항목은 10가지였다.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71.7%),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79.0%)는 비교적 양호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45.6%),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는 취약하다”고 인식하였다(68.6%).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70.6%),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72.8%)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지만,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63.8%)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79.4%)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64.5%)는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81.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김영지 외, 2003: 187~194).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참여권에 대한 조사 항목은 3가지였는데,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59.9%),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66.7%)”,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67.0%)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장 낮게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직면하는 인권 상황은 다시 지역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도 생존권을 비교적 잘 보장받고 있지만, 보호받을 권리가 취약하고 참여권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에서도 청소년은 참여권을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유해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유유서의 풍습은 중요한 사회질서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은 발언권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른의 참여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소년의 몫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어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은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였고, 2005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의 하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청소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소년도 성인과 똑 같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사회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직에 피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에서 19세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대표를 참여시키며,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청소년을 주된 고객으로 인식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2.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권의 침해를 받기 쉬운 소수집단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수집단 청소년은 주류집단에서 벗어난 모든 청소년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인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인권문제는 주류 청소년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특정 집단의 인권 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근로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근로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연소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연소자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지능발달의 장애를 초래하고, 인격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연소자의 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한국에서 연소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1947년에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 현행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를 위한 보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 청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 청소년의 대표적인 인권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합리적으로 일할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과거 근로 청

소년은 학생 청소년과 함께 중요한 청소년 집단이었지만, 최근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전업이 근로자인 청소년은 소수이다. 상당수의 근로 청소년은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란 점에서 그의 인권문제도 가변성이 크다.

근로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이 합리적으로 일할 노동권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고 사용금지 직종을 정하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4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3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요구되며, 여자와 소년에 대한 각종 보호 조항이 적용되기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근로 청소년에 대한 각종 보호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근로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국가는 고령자와 기혼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청소년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최근 청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이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배제되기 쉽다.

둘째, 근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근 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만, 현재 노동시

장에서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를 말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10조)고 하여, 사실상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자와 소년의 노동에 대한 보호 조항(제63조에서 제75조까지) 중에서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의 제한과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의 제공을 제외하고,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68조)”는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급료로 일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야업과 휴일근로를 당연하게 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18세 미만의 근로 청소년은 사실상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착취적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 즉,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제5조 제1항)고 하지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이 일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이기에 오후 10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시키고 있다. 심지어 정규 근로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부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근로 청소년이 성적 착취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근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기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출청소년 등 낮은 임금만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벌 수 없는 청소년은 밤 늦게까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일하게 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8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티켓다방, 단란주점, 변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예컨대, 티켓다방의 경우 영업허가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서 합법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일정시간 동안 티켓을 끊는 형식으로 매매춘에 관여하게 한다. 단란주점은 법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술집 밖에서 접대부를 일시적으로 차용하고, 술자리에 이어서 2차라는 이름으로 매매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휴게음식점에서 청소년의 매매춘을 알선하고, 단란주점은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만, 업주들은 업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성적 착취를 합리화한다.

특히, 매매춘업소는 소녀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매매춘을 강요하고, 인신매매 과정에서 생긴 거래 대가를 소녀에게 차용증의 형식으로 강요하여,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처럼 매매춘의 강요와 성폭력 그리고 일상적인 성적 착취 속에 있는 많은 청소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2) 장애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 법적 제도화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생긴다. 장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관련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이 주목을 받기에,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장애인의 인권이 매우 낮게 취급되었기에 최근 점진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청소년의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발달과업은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셈하기 등 꼭 필요한 기초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다. 장애 청소년은 청소년이기에 배워야 할 것을 장애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수화나 점자와 같이 별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학습하기 위해서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통합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즉,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교육 의무화를 규정했다. 그렇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년이 올라가 입시부담이 커질수록 배려와 이해는 고사하고, 통합교육 자체가 봉쇄당하고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1999년 12월 충북 서원대가 한 지체장애인의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2000년에는 서울교대가 특차전형에서 합격한 시각장애인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 청소년은 모든 청소년이 가진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장애 청소년의 낮은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후 직업선택권과 문화향유권 등을 보장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 청소년의 이동권이 매우 취약하고 정보접근권이 무시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제3조)고 강조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제2항)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은 학교에서조차도 이동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 사례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박지주씨는 2001년 3월 28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결핵성 척수염을 앓고 난 뒤 두 다리를 잃은 박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면서 학교마다 받아주지 않아 10여년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박씨가 주로 수업을 듣는 인문대 5층 건물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강의실에 오르내릴 때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학교 건물 22곳 중에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3곳뿐이었고, 그나마 설치된 휠체어용 경사로도 기울기가 너무 급하거나 폭이 좁아 편의시설이 되지는 못했다. 참다 못한 박씨의 거듭된 요청에 학교당국은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보장됐어야 하는 권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며 박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한겨레 2001년 4월 3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결은 대학으로 하여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에 큰 선례를 남긴 판결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어느 특별한 학교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점차 편의시설 확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동권과 함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0조에서 정보에의 접근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조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민원실에 1인 이상의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공무원 몇 명당 수화통역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 청소년의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공식적인 학습을 마치고 일터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장차 직업선택에 필요한 교양교육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직업활동에 꼭 필요한 감각기관을 결손하는 경우가 많기에, 잔존 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경

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장애 청소년은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을 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진로교육은 전통적인 직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은 대부분 실업계에 준하고, 실업교육의 내용도 목공, 원예 등 장차 직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9조 1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심의 주된 대상은 성인 장애인이고 중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소년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장애인 인권상황의 향상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소수 집단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사각지대였던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성폭력 문제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어서 피해 여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과 비교할 때 장애 청소년의 인권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이는 장애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에 그 부모가 대리해서 인권을 옹호해야 하고, 청소년은 성인보다 선천성 장애가 더 많기에 장애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을 지칭한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립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0세 미만을 포괄하기도 한다.

2004년 12월 현재 남한에 입북한 탈북자의 수는 6,304명이고, 그중 20세 이하는 1,292명이다. 매년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기에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정착지원제도의 변경으로 자립정착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혼자 사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성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존 청소년정책은 일반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북한이탈 청소년은 양쪽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는 국내 정착과정에서 의·식·주의 충족과 같은 기초생활의 보장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 건강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정책도 기초생활보장, 학업지원, 건강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혼자 온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이탈된 이후 수개

월 혹은 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사회 정착과정에서 당면하는 인권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 사회 적응과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정착지원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이 지급되고, 북한 내에서의 지위나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에 따른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국내정착지원제도는 2005년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국내정착 지원제도가 자칫 북한이탈주민에게 의존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2005년부터 초기정착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주거지원비를 1,000만원 증액하며, 분기 분할금을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을 매월 34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가족단위로 온 경우에는 생계지원비를 합칠 경우에 월 100만원에 상당할 수도 있지만, 혼자 이탈한 경우에는 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다.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단위 주민은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비록 주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어울리고 남한의 다른 청소년과 활발히 교류하지 못하여 소외되기 쉽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학업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탈북 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했기에 체계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3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취학 대상자는 625명이고, 그중 464명이 재학생이며 취학률은 74.2%이다. 각급 학교별로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17명이지만 재학생은 364명으로 취학률은 167%이고, 중학교의 취학률은 57.9%,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탈북 후 상당기간 동안 제3국에 체류하면서 취학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대체로 북한이탈 청소년은 2~3년 정도 낮은 학령기의 청소년과 함께 학교를 다닌다. 다소 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북한이탈 청소년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언어나 문화 등에서 다른 청소년과 차이가 나기에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생애주기에서 볼 때, 청소년은 아동이나 노인과 비교하여 신체적인 질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에 정신적·심리적 질병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식량난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오랫동안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의 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훨씬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영양실조로 신체발육이 늦고, 탈북 후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갖고 있다. 북한 출신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북한에 있거나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증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 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후의 보루인 국가조차도 청소년을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폭언, 차별 등은 흔히 자녀교육 혹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청소년 자녀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기에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폭언이나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최근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교사의 폭언, 체벌, 차별 등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한국의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실에서는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권을 배려하는 행동양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먼저 습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주류 청소년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근로 청소년의 인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행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을 공식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절실한 권리인 학습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직업선택권, 직업재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 주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언어 등으로 주변 청소년에게 쉽게 따돌림을 당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인권을 경시해 온 관습까지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사회적으로 성인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의 성숙 정도에 상응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소외 계층은 당사자의 권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변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소외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그 개선점을 조사·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Ⅲ. 청소년인권 실태 의식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방법
3. 조사 결과 및 해석
4. 조사 결과 요약
5. 시사점

Ⅲ. 청소년인권 실태 의식 조사

이 장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의 전국 중·고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대상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은 총 2,910명으로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에 의하면 남학생이 전체의 52%, 여학생이 48%이다. 이들 중 중학생은 49%, 인문계 고등학생이 33%, 실업계 고등학생이 12%였다. 조사 참여자들이 평가한 가정경제 수준은 ‘매우 못하는 편’이 전체의 3%,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 20%, ‘중간수준’이 62%, ‘중간보다 잘 사는 편’이 13%, 그리고 ‘매우 잘 사는 편’이 1%이다.

거주 지역 분포도를 보면 서울 거주 학생들이 전체의 21%, 광역시 거주자는 33%, 중소도시 28%,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은 16%였다. 부모생존 여부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계시’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93%, ‘아버지만 계시’는 경우는 2%, ‘어머니만 계시는 경우’는 3%,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는 1%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9%, 고졸이 51%, 전문대졸이 3%, 대졸이 27%, 대졸 이상이 7%이다.

학교관련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적 분포는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경우가 25%, 상위 21%~40%가 21%, 상위 41%~60%가 30%, 그리고 상위 61% 이하가 14%이다. 학교 임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14%, 교내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46%, 그리고 교외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10%이다.

<표 III-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변 인	빈 도	백분율 %
성 별		
남	1503	51.6
여	1386	47.6
무응답	21	.7
교 급		
중학교	1429	49.1
인문고	961	33.0
실업고	355	12.2
무응답	165	5.7
가정경제 수준		
매우 못 사는 편	77	2.6
중간보다 못 사는 편	592	20.3
중간수준	1794	61.6
중간보다 잘 사는 편	388	13.3
매우 잘 사는 편	41	1.4
무응답	18	.6
거주 지역		
서울	608	20.9
광역시	970	33.3
중·소도시	816	28.0
군·읍·면	475	16.3
무응답	41	1.4
부모생존 여부		
두 분 모두 생존	2710	93.1
아버지만 생존	49	1.7
어머니만 생존	87	3.0
두 분 모두 사망	20	.7
무응답	44	1.5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250	8.6
고졸	1495	51.4
전문대졸	99	3.4
대졸	787	27.0
대졸 이상	203	7.0
무응답	76	2.6

< 표 계속 >

변 인	빈 도	백분율 %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728	25
상위 21%~40%	620	21.3
상위 41%~60%	858	29.5
상위 61% 이하	611	14.3
무응답	93	6.7
학교임원 활동 여부		
예	396	13.6
아니오	2430	83.5
무응답	84	2.9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		
예	1347	46.3
아니오	1504	51.7
무응답	59	2.0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		
예	302	10.4
아니오	2299	79.0
무응답	309	10.6

2) 조사의 내용

전국 중·고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2,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전국 중·고 청소년들이 평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생활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척도는 5점으로 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한다”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각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조사영역 및 조사 항목

영역	조사내용
가정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 할 때 나의 학력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시고 차별하신다
	부모님은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신다
	부모님은 성적이 나쁘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신다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가 없다
	부모님은 나에게 참기 어려운 폭언(고함, 욕설 등)을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을 사귄 때 상대 친구의 성적 및 집안 환경 등을 주요한 조건으로 고려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
	부모님은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나의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등교 시간에 쫓기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부모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것은 나의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안 형편상 부모님께서 학교에 내야할 돈을 제때 주지 못 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 용돈을 보관하고 계시면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신다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학교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을 씻거나 세면을 하기가 불편하다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갈아 입는다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교복 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교복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다
	수업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선생님께서부터 혼나거나 압수당한다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자주 받는다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
	학교에서 성적을 이유로 차별이 심하다

학 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주 체벌을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을 때 손으로 나의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린다
	선생님은 자주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신다
	학교내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학교 내 급식은 가격에 비하여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상담할 선생님이 없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학급 또는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학급 임원 및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 회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이 지역사회에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들은 대부분 나에게 반말을 한다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체벌이 더 심하다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더 심하다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방과 후에 학원을 여러 곳 다니므로 휴식 및 여가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평소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할 기관이 없다
	방과 후 저녁 시간에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 대한 양보 등의 문제로 주변의 눈치가 보여 빈자리가 생겨도 앉기가 부담스럽다
	아르바이트시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하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약속된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받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뉴스, 드라마 등)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유해업소 주인은 청소년인줄 알면서 유해업소(술집, 비디오감상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 안 되는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	

2. 조사 방법

1)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한 부분은 전반적인 생활영역별 인권침해의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를 제시하고,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의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aired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영역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상대적 크기의 순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생활영역별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하위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 혹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로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문항별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 측정 문항별 경험도와 만연도의 각 평정치별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된 인권침해의 경험도 측정 문항별로 점수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분류된 하위집단별 차이 검증을 t검증 혹은 oneway ANOVA로 실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의 집단차 분석에서 적용된 하위집단 분류 변인과 변인별 범주의 내용은 아래 <표 III-3>과 <표 III-4>에 제시하였다.

<표 III-3> 인권침해 영역별 집단차 분석에서 적용된 조사대상의 하위집단 변인

인권침해 영역	하위집단 변인
가정생활 영역	성, 교급, SES, 양친가족여부, 아버지의 학력,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
지역사회생활 영역	성, 교급, SES, 거주 지역,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
학교생활 영역	성, 교급, SES, 성적, 거주 지역, 양친가족여부, 학교임원활동 여부,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

<표 III-4> 하위집단 변인의 범주

변인명	범주
교급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SES	하(중간보다 못산다), 중(중간 수준이다), 상(중간보다 잘산다)
양친가족 여부	양친가족, 한 부모가족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거주 지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도청 소재지나 시), 군·읍·면

3. 조사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가정, 지역사회, 학교생활 영역에서 인권 실태

청소년의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와 인권침해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생활영역별로 측정된 경험도와 만연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II-5>에 제시하였다.

<표 III-5>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의 기술적 결과

생활영역	통계치		경험도		만연도		t
	\bar{X}	SD	\bar{X}	SD	\bar{X}	SD	
가정생활 (N=2701)	2.06	.57	3.02	.60			-75.64***
지역사회생활 (N=2496)	2.87	.59	3.33	.64			-43.19***
학교생활 (N=2499)	3.06	.62	3.33	.62			-27.09***

주)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다음은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표 III-3>에 제시된 하위집단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III-6>에 제시하였다.

<표 III-6>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18)				
남		2.12	.65	t=8.24***
여		1.92	.63	
② SES(N=2819)				
하		2.16 ^a	.64	F=20.19***
중		1.97 ^b	.63	
상		2.01 ^b	.70	
③ 양친가족여부(N=2798)				
양친가족		2.01	.65	t=-2.01*
한 부모가족		2.12	.67	

***P<.001, *P<.05,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표 III-6>에 의하면,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정도는 성별, SES별, 그리고 양친가족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많았고, SES가 하류층이 중, 상류층에 비해서 인권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한 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서 인권침해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SES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I-7>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7> 지역사회생활 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592)				
남		2.81	.67	t = -5.30***
여		2.94	.61	
② 교급(N=2457)				
중학교		2.79 ^a	.65	F = 23.15***
인문고		2.98 ^b	.61	
실업고		2.84 ^a	.68	
③ SES(N=2592)				
하		2.94 ^a	.67	F = 6.67**
중		2.84 ^b	.63	
상		2.90 ^a	.68	
④ 거주 지역(N=2579)				
서울		2.92 ^a	.68	F = 8.09***
광역시		2.91 ^a	.61	
중·소도시		2.87 ^a	.68	
군·읍·면		2.74 ^b	.63	

***P<.001, **P<.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표 III-7>에 의하면, 가정생활 영역과는 반대로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침해 경험도가 높았다. 교급별로는 인문계고등

학교 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인권침해 경험도가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나 상류층의 청소년들이 중류층 청소년들보다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정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III-8>에 제시하였다.

<표 III-8> 학교생활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605)				
남		3.02	.72	t = -2.50*
여		3.08	.64	
② 교급(N=2473)				
중학교		2.93 ^a	.70	F = 33.47***
인문고		3.15 ^b	.63	
실업고		3.14 ^b	.64	
③ SES(N=2606)				
하		3.16 ^a	.68	F = 9.99***
중		3.02 ^b	.67	
상		3.01 ^b	.72	
④ 거주지역(N=2590)				
서울		2.85 ^a	.69	F = 33.00***
광역시		3.14 ^b	.63	
중·소도시		3.16 ^b	.69	
군·읍·면		2.93 ^a	.65	

***P<.001, *P<.05,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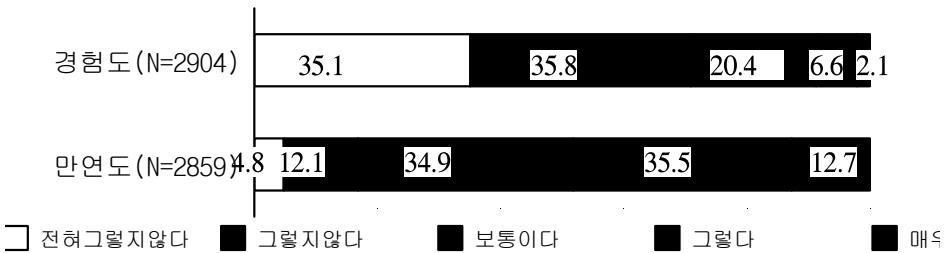
<표 III-8>에 의하면,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정도는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교급별, SES별, 거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SES별로는 하류층의 청소년들이 중, 상류층의 청소년들보다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끝으로 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이나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을 통해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 수준, 그리고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각 생활영역별로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루어진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문항별 분석결과를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순으로 제시하였다.

2) 청소년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 실태

1.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 할 때 나의 학력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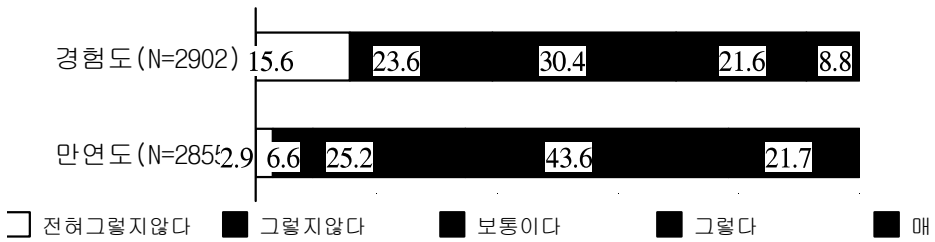
<표 III-9-1>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권 침해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3)				
남		2.18	1.03	t = 7.73***
여		1.90	.95	

*** P<.001

상급학교 진학 결정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권 침해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9%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그렇다’ 6.6%, ‘매우 그렇다’ 6.6%), 48%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렇다’ 35.5%, ‘매우 그렇다’ 12.7%).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2. 부모님은 나의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시고 차별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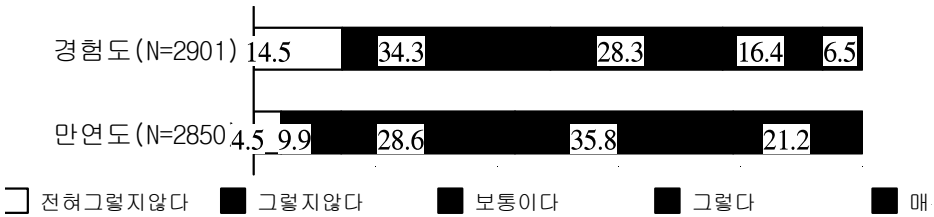
<표 III-9-2> 부모님이 성적을 비교하는 경험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1)				
남		2.99	1.19	t = 6.94***
여		2.69	1.16	
② 교급(N=2,737)				
중학교		2.92 ^a	1.21	F = 10.37***
인문고		2.85 ^a	1.14	
실업고		2.60 ^b	1.19	

***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이 자신의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0%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그렇다’ 21.6%, ‘매우 그렇다’ 8.8%), 65%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렇다’ 43.6%, ‘매우 그렇다’ 21.7%). 즉,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2배 이상이나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도가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3. 부모님은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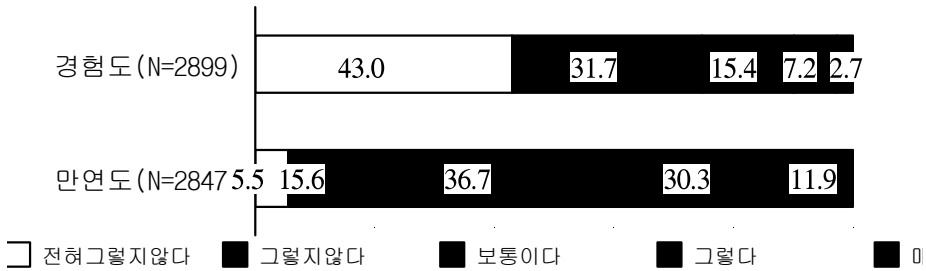
<표 III-9-3>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1)				
남		2.81	1.13	t = 7.42***
여		2.51	1.07	
② 교급(N=2,736)				
중학교		2.72 ^a	1.14	F = 8.462***
인문고		2.68 ^a	1.11	
실업고		2.45 ^b	1.03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이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3%가 경험하고 있었고(‘그렇다’ 16.4%, ‘매우 그렇다’ 6.5%), 57%는 이러한 강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렇다’ 35.8%, ‘매우 그렇다’ 21.2%).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 2.5배나 높았다. 한편,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4. 부모님은 성적이 나쁘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신다.



<표 III-9-4> 성적으로 인한 부모님의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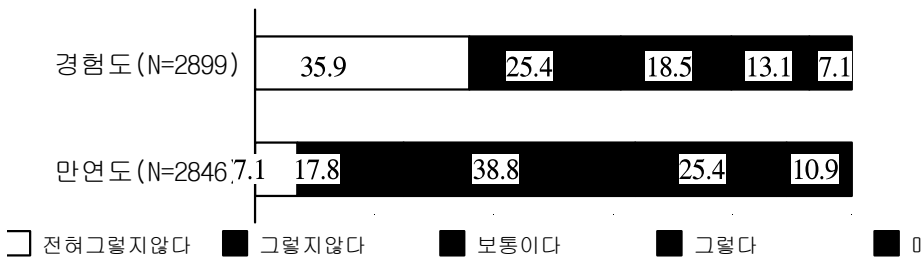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8)				
남		2.12	1.11	t = 9.70***
여		1.75	.95	
② 교급(N=2,737)				
중학교		2.08 ^a	1.12	F = 26.66***
인문고		1.83 ^a	.97	
실업고		1.72 ^b	.90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성적이 나쁘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 의해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0%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7.2%, ‘매우 그렇다’

2.7%), 42%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30.3%, '매우 그렇다' 11.9%).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별 경험도는 성차와 교급차에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5.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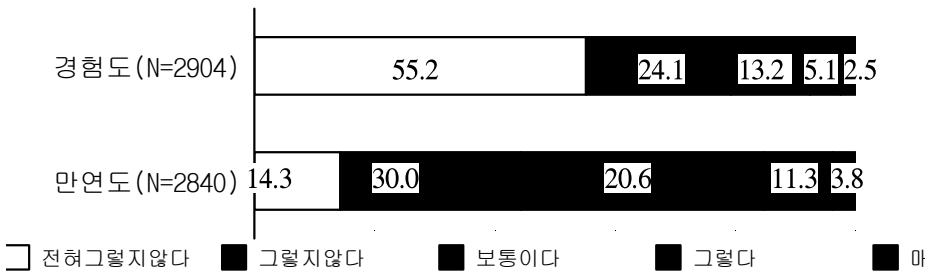
<표 III-9-5> 집에서 놀 때 부모님 눈치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9)				
남		2.47	1.33	t = 7.53***
여		2.11	1.18	
② 교급(N=2,735)				
중학교		2.24 ^a	1.29	F = 16.86***
인문고		2.49 ^b	1.26	
실업고		2.10 ^a	1.18	
③ SES(N=2,882)				
하		2.37 ^{ab}	1.30	F = 8.92***
중		2.23 ^a	1.23	
상		2.50 ^b	1.36	
④ 아버지 학력(N=2,823)				
중학교 졸업 이하		2.10 ^a	1.22	F = 14.05***
고등학교 졸업		2.22 ^a	1.24	
전문대 졸업 이상		2.46 ^b	1.31	

***P<.001, a, b, a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가 없음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0%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13.1%, ‘매우 그렇다’ 7.1%), 36%는 집에서 쉬거나 놀 때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렇다’ 25.4%, ‘매우 그렇다’ 10.9%).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의 눈치 경험도는 성별, 교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님은 나에게 참기 어려운 폭언(고함, 욕설 등)을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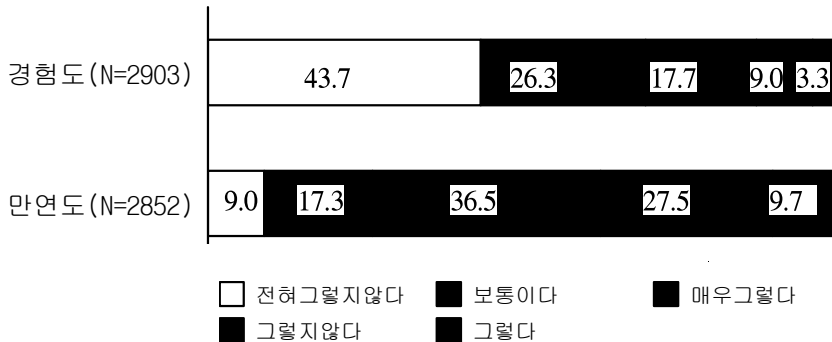
<표 III-9-6> 부모님에 의한 폭언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SES(N=2,886)				F = 18.58***
하		1.96 ^a	1.13	
중		1.68 ^b	.97	
상		1.75 ^b	1.05	

***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에 의해 고함이나 욕설 등의 참기 어려운 폭언을 경험하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8%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2.5%), 15%는 이러한 폭언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 11.3%, ‘매우 그렇다’ 3.8%).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모님의 폭언 경험도에 있어서 SES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을 사귄 때 상대 친구의 성적 및 집안 환경 등을 주요한 조건으로 고려하신다.



<표 III-9-7> 부모님이 성적 및 집안 환경을 친구 사귀는 조건으로 고려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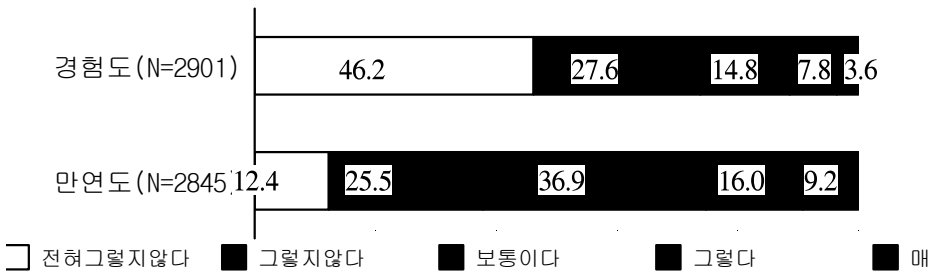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2)				
남		2.10	1.18	t = 4.25 ^{***}
여		1.93	1.06	
② 교급(N=2,738)				
중학교		1.99 ^a	1.12	F = 6.73 ^{**}
인문고		2.11 ^b	1.16	
실업고		1.88 ^a	1.08	
③ SES(N=2,885)				
하		2.06 ^{ab}	1.16	F = 8.45 ^{***}
중		1.96 ^a	1.08	
상		2.21 ^b	1.26	
④ 아버지 학력(N=2,827)				
중학교 졸업 이하		1.93 ^a	1.03	F = 11.27 ^{***}
고등학교 졸업		1.95 ^a	1.08	
전문대 졸업 이상		2.15 ^b	1.20	

P<.01 *P<.001, a, b, a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친구들을 사귄 때 부모님이 상대 친구의 성적 및 집안 환경 등을 주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2%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9.0%, ‘매우 그렇다’ 3.3%), 37%는 이러한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 27.5%, ‘매우 그렇다’ 9.7%).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모님이 성적 및 집안 환경을 친구 사귀는 조건으로 고려하는 경험도에 있어서 성별, 교

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



<표 III-9-8>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간섭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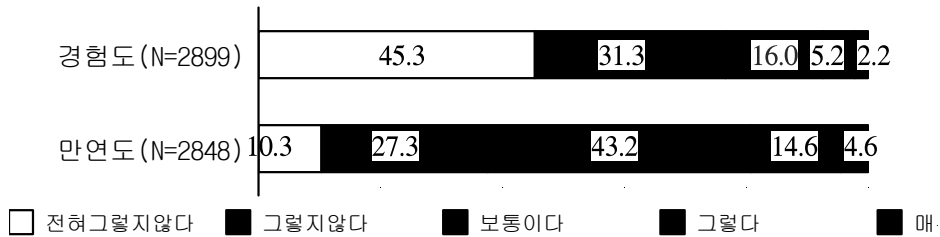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0)				
남		2.25	1.19	t = 16.01***
여		1.62	.92	
② SES(N=2,883)				F = 7.58**
하		1.98 ^{ab}	1.16	
중		1.90 ^a	1.07	
상		2.12 ^b	1.22	

** P<.01 *** P<.001, a, b, a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1%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7.8%, ‘매우 그렇다’ 3.6%), 25%는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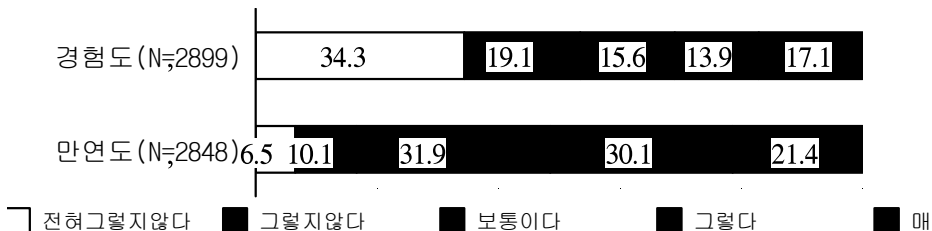
각하였다(‘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9.2%).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간접 경험도는 성별, SES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부모님은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나의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십니다.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7%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에 5.2%, ‘매우 그렇다’에 2.2%), 19%는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에 14.6%, ‘매우 그렇다’에 4.6%).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2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0. 등교 시간에 쫓겨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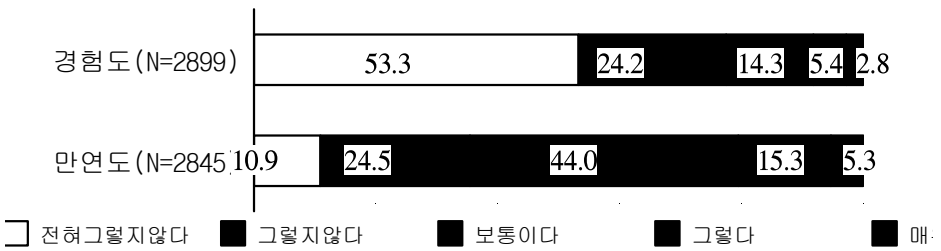
<표 III-9-9> 등교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8)				
남		2.50	1.48	t = -3.92***
여		2.72	1.51	
② 교급(N=2,735)				
중학교		2.31 ^a	1.42	F = 53.43***
인문고		2.85 ^b	1.52	
실업고		2.98 ^b	1.49	
③ SES(N=2,881)				
하		2.86 ^a	1.53	F = 13.54***
중		2.55 ^b	1.48	
상		2.44 ^b	1.49	
④ 아버지 학력(N=2,823)				
중학교 졸업 이하		2.81 ^a	1.53	F = 6.70**
고등학교 졸업		2.66 ^a	1.49	
전문대 졸업 이상		2.49 ^b	1.48	
⑤ 양친가족 여부(N=2,836)				
양친가족		2.58	1.49	t = -3.68***
한 부모 가족		3.06	1.55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등교 시간에 쫓기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음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1%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13.9%, ‘매우 그렇다’ 17.1%),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2%로 나타났다(‘그렇다’ 30.1%, ‘매우 그렇다’ 21.4%).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1.5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험도에 있어서 성별, 교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양친가족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 중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친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부모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것은 나의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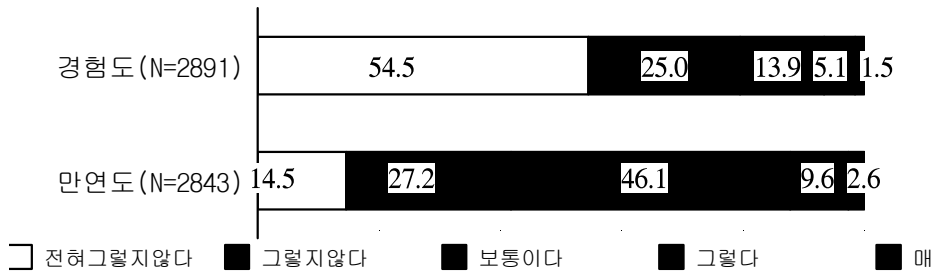
<표 III-9-10> 부모님간의 불화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8)				
남		1.86	1.06	t = 3.11 **
여		1.74	1.03	
② 교급(N=2,734)				
중학교		1.68 ^a	.98	F = 16.16 ***
인문고		1.90 ^b	1.10	
실업고		1.93 ^c	1.07	
③ SES(N=2,881)				
하		2.13 ^a	1.18	F = 45.92 ***
중		1.71 ^b	.98	
상		1.65 ^b	1.03	
④ 아버지 학력(N=2,824)				
중학교 졸업 이하		2.05 ^a	1.20	F = 8.98 ***
고등학교 졸업		1.80 ^b	1.02	
전문대 졸업 이상		1.74 ^b	1.04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것이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8%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5.4%, ‘매우 그렇다’ 2.8%),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21%로 나타났다(‘그렇다’ 15.3%, ‘매우 그렇다’ 5.3%). 즉,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5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모님간의 불화로 인한 학교생활의 부정적 영향 경험도에 있어서 성별, 교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 중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집안 형편상 부모님께서 학교에 내야할 돈을 제때 주지 못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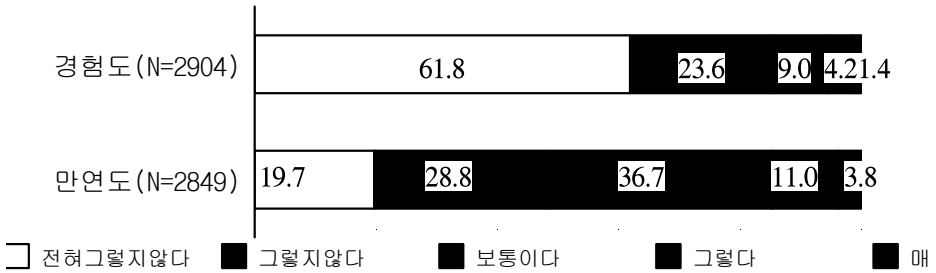
<표 III-9-11>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6)				
중학교		1.60 ^a	.90	F = 25.18***
인문고		1.78 ^b	1.00	
실업고		1.97 ^c	1.03	
② SES(N=2,873)				
하		2.43 ^a	1.17	F = 258.5***
중		1.57 ^b	.80	
상		1.38 ^c	.84	
③ 아버지 학력(N=2,816)				
중학교 졸업 이하		2.12 ^a	1.15	F = 47.23***
고등학교 졸업		1.81 ^b	.97	
전문대 졸업 이상		1.54 ^c	.89	
④ 양친가족 여부(N=2,829)				
양친 가족		1.71	.95	t = -5.91***
한 부모 가족		2.30	1.16	

*** P<.001, a,b,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내야할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험도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7%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1.5%),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12%로 나타났다(‘그렇다’ 9.6%, ‘매우 그렇다’ 2.6%).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1.5배를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내야할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험도에 있어서 교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양친가족 여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 중류층보다, 중류층이 상류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의 경우보다, 고졸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친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친 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3. 부모님께서서는 내 용돈을 보관하고 계시면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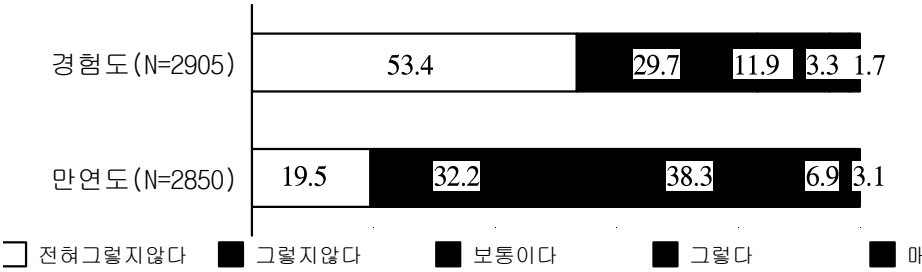
<표 III-9-12> 부모님이 내 용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3)				
남		1.71	1.00	t = 6.89 ^{***}
여		1.48	.80	
② SES(N=2,886)				
하		1.73	.99	F = 8.552 ^{***}
중		1.56	.88	
상		1.55	.97	
③ 아버지 학력(N=2,828)				
중학교 졸업 이하		1.77 ^a	1.06	F = 5.26 ^{**}
고등학교 졸업		1.59 ^b	.91	
전문대 졸업 이상		1.57 ^b	.90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부모님이 자신의 용돈을 보관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6%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4.2%, ‘매우 그렇다’ 1.4%),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15%로 나타났다(‘그렇다’ 11.0%, ‘매우 그렇다’ 3.8%).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5배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신의 용돈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험도에 있어서 성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SES에서 하류층이 중류층보다, 중류층이 상류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표 III-9-13> 힘든 집안일 및 다른 일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40)				
중학교		1.68 ^a	.93	F = 4.74 ^{**}
인문고		1.66 ^a	.90	
실업고		1.81 ^b	.94	
② SES(N=2,887)				
하		1.93 ^a	1.02	F = 26.78 ^{***}
중		1.63 ^b	.85	
상		1.63 ^b	.98	
③ 아버지 학력(N=2,829)				
중학교 졸업 이하		1.87 ^a	.96	F = 5.18 ^{**}
고등학교 졸업		1.69 ^b	.88	
전문대 졸업 이상		1.66 ^b	.95	
④ 양친가족 여부(N=2,841)				
양친가족		1.68	.90	t = -3.01 ^{**}
한 부모 가족		1.96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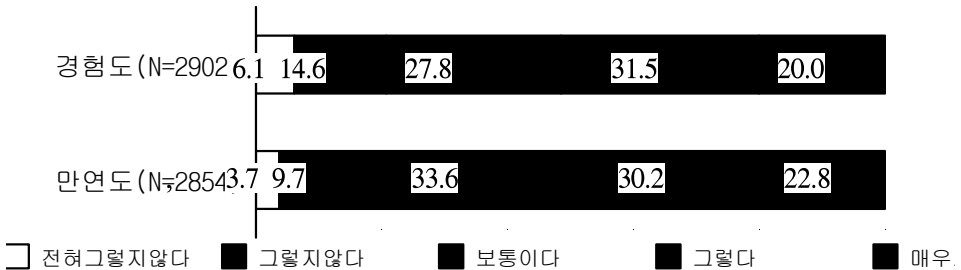
** P<.01 ***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에 대한 경험도는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5%에 해당하였으나(‘그렇다’ 3.3%, ‘매우 그렇다’ 1.7%), 이러

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10%로 나타났다 ('그렇다' 6.9%, '매우 그렇다' 3.1%).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에 대한 경험도에 있어서 교급별, SES별, 아버지 학력별, 양친가족 여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 중류층과 상류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친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인권 실태

1.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이 지역사회에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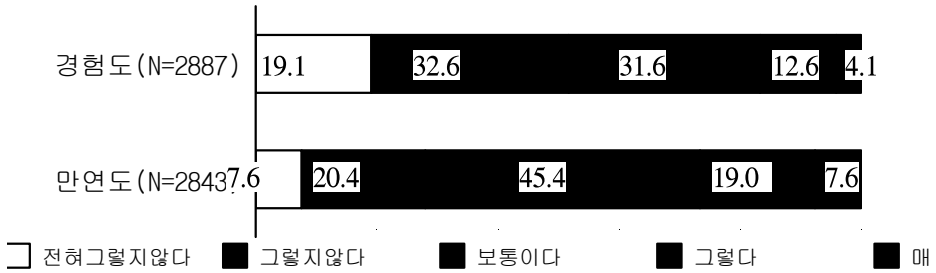
<표 III-10-1>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 부족의 어려움에 있어서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1)				
남		3.33	1.18	t = 6.13***
여		3.58	1.08	
② 교급(N=2,738)				
중학교		3.21 ^a	1.14	F = 87.58***
인문고		3.82 ^b	1.05	
실업고		3.40 ^c	1.13	
③ SES(N=2,884)				
하		3.61 ^a	1.13	F = 10.99***
중		3.43 ^b	1.11	
상		3.30 ^b	1.25	
④ 지역(N=2,861)				
서울		3.32 ^a	1.16	F = 6.03***
광역시		3.49 ^b	1.08	
중·소도시		3.42 ^b	1.15	
군·읍·면		3.60 ^b	1.2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55%가 경험을 하였으며(‘그렇다’ 31.5%, ‘매우 그렇다’ 20.0%),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3%로 나타났다(‘그렇다’ 30.2%, ‘매우 그렇다’ 22.8%). 한편,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SES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SES별로는 하류층에 속한 집단이 중, 상류층 청소년들에 비해 더 어려움을 느끼며 지역별로는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표 III-10-2>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의 제재에 있어서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3)				F = 12.21***
중학교		2.42 ^a	1.03	
인문고		2.63 ^b	1.09	
실업고		2.45 ^a	1.08	
② SES(N=2,869)				F = 10.35***
하		2.63 ^a	1.11	
중		2.43 ^b	1.02	
상		2.59 ^a	1.15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동아리활동 참여시 부모나 학교로부터의 제재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17%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4.1%),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27%로 나타났다(‘그렇다’ 19.0%, ‘매우 그렇다’ 7.6%).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의 제재에 대한 경험 정도는 교급별, SES별, 학교 밖 동아리활동 여

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제재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SES별로는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한 집단이 중류층 청소년보다 제재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교 밖 동아리활동을 하는 집단이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제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들은 대부분 나에게 반말을 한다.



<표 III-10-3> 처음 만나는 성인들에 의해 반말을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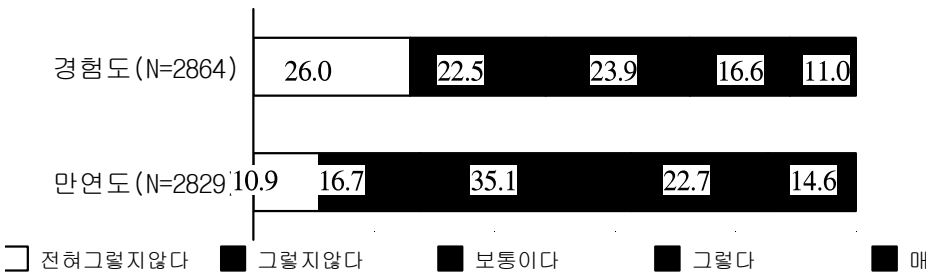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9)				F = 5.30**
중학교		3.02 ^a	1.23	
인문고		3.18 ^b	1.15	
실업고		3.07 ^a	1.11	

**P<.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처음 만나는 성인들이 반말 하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8%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4.5%, ‘매우 그렇다’ 13.9%),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6%로 나타났다(‘그

렇다' 28.0%, '매우 그렇다' 17.9%). 지역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들에 의한 반말을 경험하는 정도는 교급별로 차이를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성인에 의해 반말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체벌이 더 심하다.



<표 III-10-4>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도에 따른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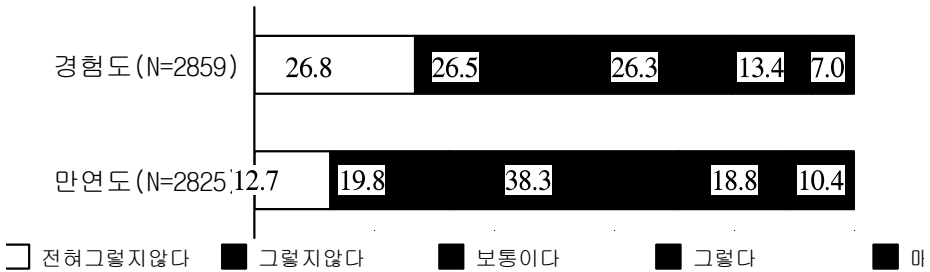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03)				F = 32.09***
중학교		2.82 ^a	1.38	
인문고		2.38 ^b	1.24	
실업고		2.67 ^a	1.23	
② 지역(N=2,826)				F = 26.27***
서울		2.93 ^a	1.40	
광역시		2.60 ^b	1.26	
중·소도시		2.69 ^b	1.36	
군·읍·면		2.23 ^c	1.15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학교보다 더 심한 체벌을 학원에서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8%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6.6%, '매우 그렇다' 11.0%),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7%로 나타났다('그렇

다’ 22.7%, ‘매우 그렇다’ 14.6%).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도에 따른 집단 차이에서는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체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에서는 서울, 광역시 및 중소도시, 군·읍·면 순으로 체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이 더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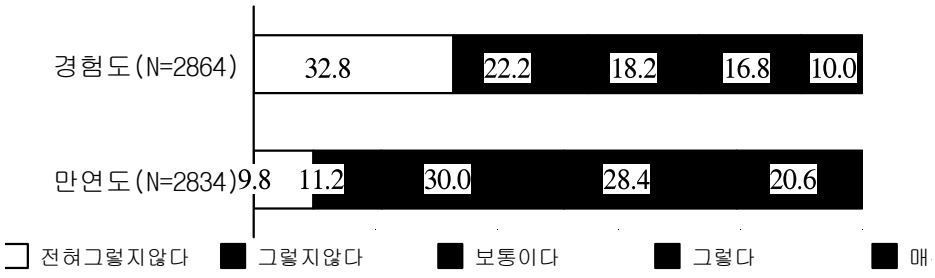
<표 III-10-5>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정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01)				F = 5.416**
중학교		2.54 ^a	1.27	
인문고		2.37 ^b	1.16	
실업고		2.50 ^a	1.15	
② 지역(N=2,822)				F = 16.40***
서울		2.61 ^a	1.26	
광역시		2.52 ^a	1.20	
중·소도시		2.51 ^a	1.23	
군·읍·면		2.12 ^b	1.08	

** P<.01 ***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학교보다 더 심한 언어적 폭력을 학원에서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0%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3.4%, ‘매우 그렇다’ 7.0%), 전체 조사대상의 29%가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 18.8%, ‘매우 그렇다’ 10.4%).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에서는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군·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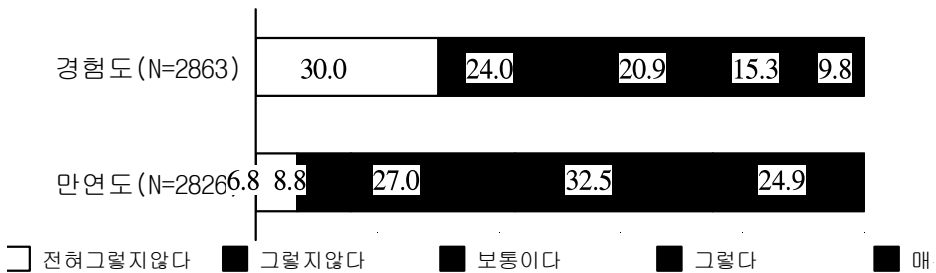
<표 III-10-6>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경험하는 정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02)				F = 8.45***
중학교		2.56 ^a	1.40	
인문고		2.34 ^b	1.30	
실업계		2.58 ^a	1.31	
② 지역(N=2,826)				F = 26.49***
서울		2.63 ^a	1.43	
광역시		2.50 ^a	1.34	
중·소도시		2.65 ^a	1.38	
군·읍·면		2.00 ^b	1.15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학원에서의 강제적 자율학습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7%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6.8%, ‘매우 그렇다’ 10.0%),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9%로 나타났다(‘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20.6%).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경험하는 정도는 교급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원에서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군·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방과 후에 학원을 여러 곳 다니므로 휴식 및 여가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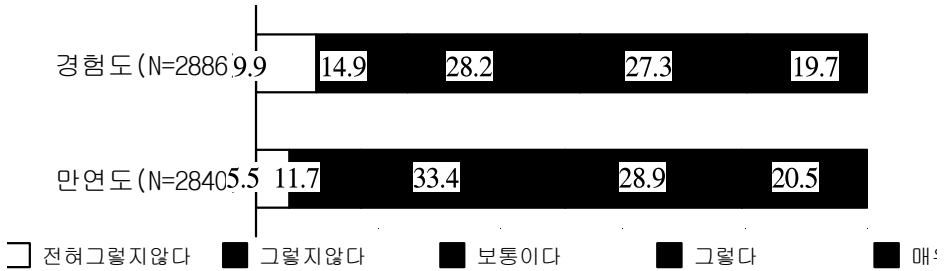
<표 III-10-7> 방과 후 다니는 학원으로 인한 여가생활 지장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00)				
중학교		2.61 ^a	1.37	F = 9.92 ^{***}
인문고		2.48 ^a	1.26	
실업고		2.27 ^b	1.28	
② SES(N=2,846)				
하		2.40 ^a	1.35	F = 10.79 ^{***}
중		2.49 ^a	1.29	
상		2.77 ^b	1.39	
③ 지역(N=2825)				
서울		2.63 ^a	1.38	F = 15.46 ^{***}
광역시		2.54 ^a	1.27	
중·소도시		2.59 ^a	1.38	
군·읍·면		2.14 ^b	1.17	

***P<.001, a, b는 Scheffé사후검증 결과임.

학원으로 인해 휴식 및 여가생활의 지장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5%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5.3%, ‘매우 그렇다’ 9.8%),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7%로 나타났다(‘그렇다’ 32.5%, ‘매우 그렇다’ 24.9%). 방과 후 다니는 학원으로 인해 휴식 및 여가생활에 지장을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교급별, SES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여가생활의 지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SES별로는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과 하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군·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지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8. 평소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할 기관이 없다.



<표 III-10-8>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기관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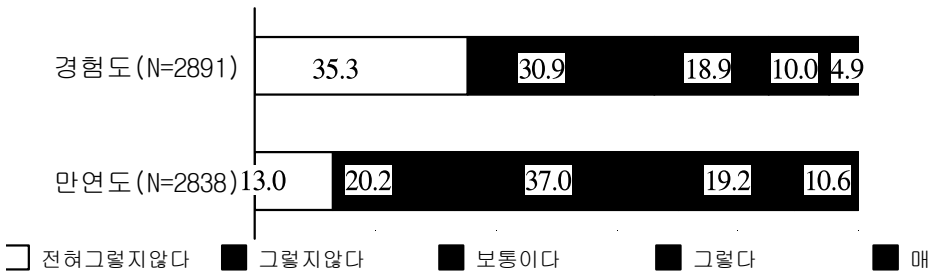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67)				
남		3.19	1.27	t = -5.98***
여		3.47	1.16	
② 교급(N=2,723)				
중학교		3.08 ^a	1.26	F = 68.28***
인문고		3.67 ^b	1.10	
실업고		3.27 ^c	1.25	
③ SES(N=2,869)				
하		3.46 ^a	1.24	F = 5.46**
중		3.28 ^b	1.21	
상		3.28 ^b	1.27	
④ 지역(N=2,849)				
서울		3.17 ^a	1.30	F = 9.51***
광역시		3.44 ^b	1.15	
중·소도시		3.23 ^c	1.22	
군·읍·면		3.45 ^b	1.27	

P<.0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고민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담할 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7%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7.3%, ‘매우

그렇다' 19.7%),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9%로 나타났다('그렇다' 28.9%, '매우 그렇다' 20.5%). 이러한 차이는 성별, 교급별, SES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담기관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느끼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SES별로는 하류층에 속한 학생들이 중류층과 상류층에 속한 학생들보다 상담기관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군·읍·면, 중소도시,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순으로 상담기관의 부재를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 방과 후 저녁 시간에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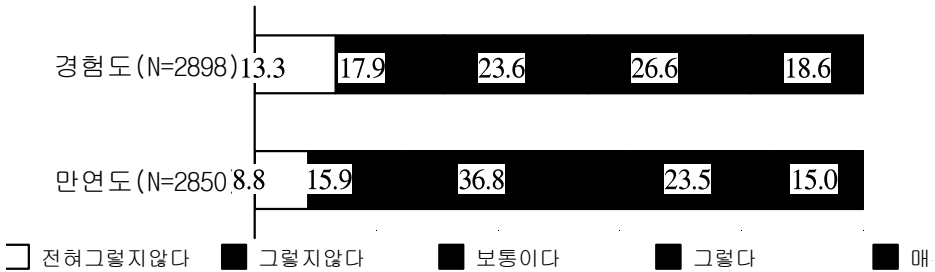
<표 III-10-9> 방과 후 저녁 시간 외출에 대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1)	남	1.91	1.06	t = -13.55***
	여	2.48	1.19	
② 교급(N=2,728)	중학교	2.14 ^a	1.15	F = 6.62**
	인문고	2.27 ^b	1.18	
	실업고	2.03 ^a	1.12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저녁시간에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15%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0.0%, ‘매우 그렇다’ 4.9%),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0%로 나타났다(‘그렇다’ 19.2%, ‘매우 그렇다’ 10.6%). 이러한 실태는 성별,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 및 중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10.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 대한 양보 등의 문제로 주변의 눈치가 보여 빈자리에 생겨도 앉기가 부담스럽다.



<표 III-10-10> 대중교통 수단에서 빈자리에 앉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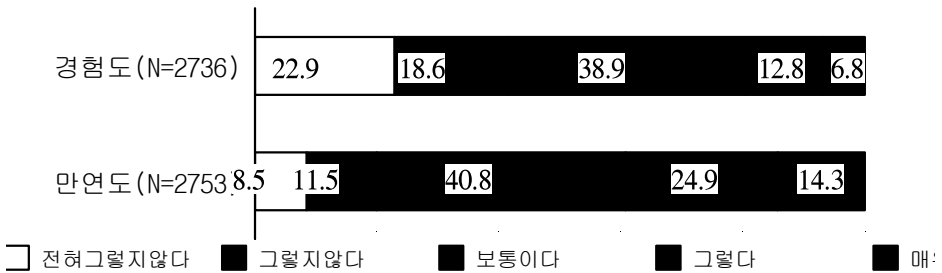
집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지역(N=2,860)				F = 5.64**
서울		3.19 ^a	1.30	
광역시		3.29 ^a	1.24	
중·소도시		3.20 ^a	1.32	
군·읍·면		3.00 ^b	1.35	

**P<.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대중교통 이용시 노약자에 대한 양보 등의 문제로 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44%에 해당하였으며(‘그렇

다’ 26.6%, ‘매우 그렇다’ 18.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9%로 나타났다(‘그렇다’ 23.5%, ‘매우 그렇다’ 15.0%). 이러한 경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광역시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군·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부담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아르바이트시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하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표 III-10-11> 아르바이트시 노동조건에 대한 불이익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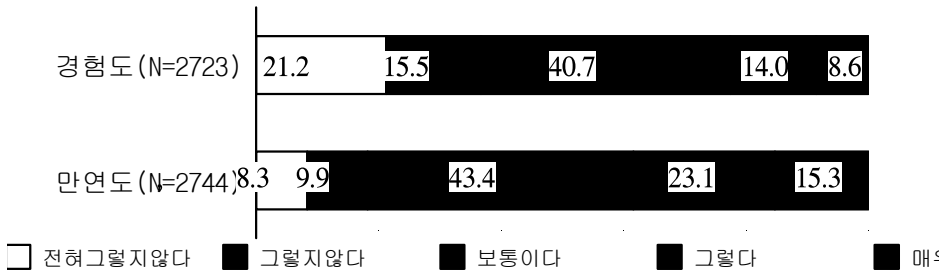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576)				F = 24.91***
중학교		2.45 ^a	1.13	
인문고		2.79 ^b	1.16	
실업고		2.67 ^c	1.19	
② SES(N=2,720)				F = 6.77**
하		2.77 ^a	1.22	
중		2.57 ^b	1.14	
상		2.62 ^a	1.18	

P<.01 *P<.001, a, b, c, a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아르바이트시 노동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0%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2.8%, ‘매우

그렇다’ 6.8%), 전체의 39%가 이러한 불이익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 24.9%, ‘매우 그렇다’ 14.3%). 이러한 경험 정도는 교급별, SES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순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SES별로는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한 학생들이 중류층에 속한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약속된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표 III-10-12> 아르바이트시 초과수당 미지급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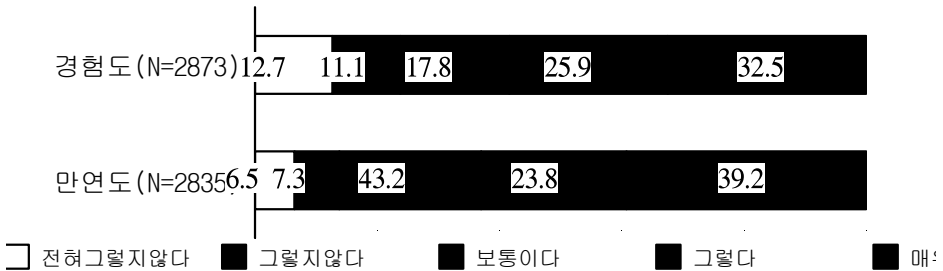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565)				F = 30.98***
중학교		3.08 ^a	1.08	
인문고		3.49 ^b	1.06	
실업고		3.27 ^b	1.13	
② SES(N=2,708)				F = 11.79***
하		2.93 ^a	1.26	
중		2.66 ^b	1.15	
상		2.72 ^b	1.24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했을 때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3%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4.0%, ‘매우 그렇다’ 8.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는 38%로 나타났다(‘그렇다’ 23.1, ‘매우 그렇다’ 15.3%).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약속된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험에 대한 차이는 교급별, SES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이와 같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ES별로는 중류층과 상류층에 속한 학생들이 하류층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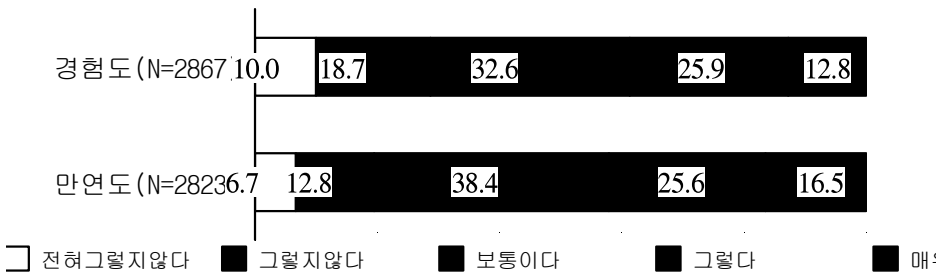
<표 III-10-13> 음란물·스팸메일의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54)				
남		3.35	1.41	t = -7.85***
여		3.75	1.30	
② 교급(N=2,710)				
중학교		3.24 ^a	1.43	F = 79.80***
인문고		3.94 ^b	1.21	
실업고		3.67 ^c	1.29	
③ SES(N=2,857)				
하		3.69 ^a	1.33	F = 5.44**
중		3.51 ^b	1.37	
상		3.46 ^b	1.44	

P<.0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은 받아 본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58%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5.9%, ‘매우 그렇다’ 32.5%),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63%로 나타났다(‘그렇다’ 23.8%, ‘매우 그렇다’ 39.2%). 이러한 경험정도는 성별, 교급별, SES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경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경험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SES별로는 중류층과 상류층에 비해 하류층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뉴스, 드라마 등)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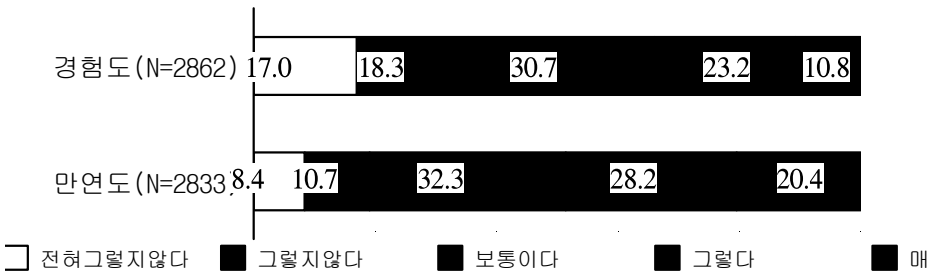
<표 III-10-14> 부정적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생각의 집단차

집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49)				
남		3.02	1.22	t = -5.16***
여		3.24	1.08	
② 교급(N=2,706)				F = 76.44***
중학교		2.89 ^a	1.14	
인문고		3.47 ^b	1.08	
실업고		3.08 ^c	1.22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청소년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9%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5.9%, ‘매우 그렇다’ 12.8%),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2%로 나타났다(‘그렇다’ 25.6%, ‘매우 그렇다’ 16.5%).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부정적인 대중매체의 보도가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유해업소 주인은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유해업소(술집, 비디오 감상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 안 되는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



<표 III-10-15> 유해업소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출입시킨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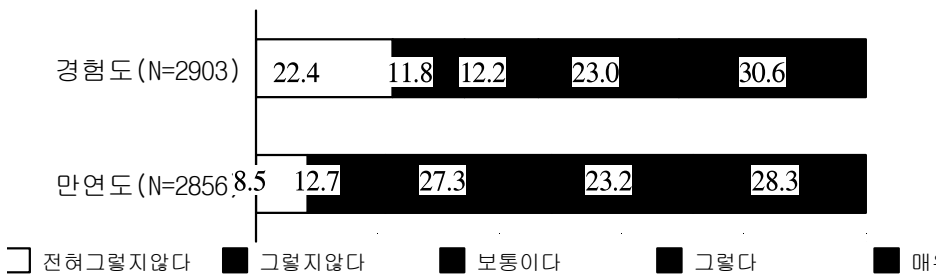
집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43)	남	2.83	1.28	t = -4.09***
	여	3.02	1.17	
② 교급(N=2,700)	중학교	2.69 ^a	1.25	F = 51.26***
	인문고	3.19 ^b	1.17	
	실업고	3.05 ^b	1.17	
③ 지역(N=2,826)	서울	3.10 ^a	1.23	F = 7.41***
	광역시	2.93 ^b	1.21	
	중·소도시	2.90 ^b	1.23	
	군·읍·면	2.74 ^b	1.26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유해업소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업소 출입의 허용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4%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3.2%, ‘매우 그렇다’ 10.8%), 전체의 49%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렇다’ 28.2%, ‘매우 그렇다’ 20.4%). 유해업소 주인은 청소년인줄 알면서 유해업소(술집, 비디오 감상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 안 되는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광역시와 중·소도시 및 군·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인권 실태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을 씻거나 세면을 하기가 불편하다.



<표 III-11-1> 겨울철 온수 미공급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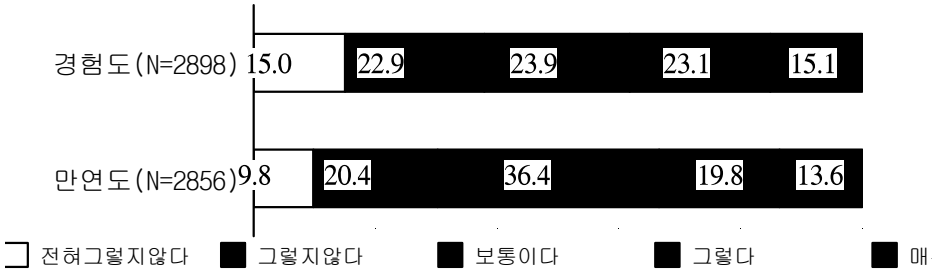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5)				
남		3.07	1.58	t = -7.79***
여		3.51	1.48	
② 교급(N=2,741)				
중학교		3.08 ^a	1.58	F = 31.02***
인문고		3.57 ^b	1.46	
실업고		3.12 ^a	1.56	
③ SES(N=2,888)				
하		3.47 ^a	1.50	F = 7.17**
중		3.24 ^b	1.55	
상		3.16 ^b	1.59	
④ 지역(N=2,865)				
서울		2.96 ^a	1.58	F = 14.25***
광역시		3.47 ^b	1.51	
중·소도시		3.25 ^b	1.55	
군·읍·면		3.38 ^b	1.53	
⑤ 교내 동아리활동(N=2,847)				
예		3.37	1.53	t = 2.80**
아니오		3.20	1.56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을 씻거나 세면시 불편했던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54%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3.0%, ‘매우 그렇다’ 30.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2%로 나타났다(‘그렇다’ 23.2%, ‘매우 그렇다’ 28.3%).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성별, 교급별, SES별, 지역별,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

층이 중류층과 상류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이 서울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다른 차이에서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표 III-11-2> 양호실의 자유로운 이용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81)				
남		2.82	1.29	t = 7.82***
여		3.20	1.27	
② 교급(N=2,736)				
중학교		2.77 ^a	1.27	F = 41.05***
인문고		3.23 ^b	1.26	
실업고		3.15 ^c	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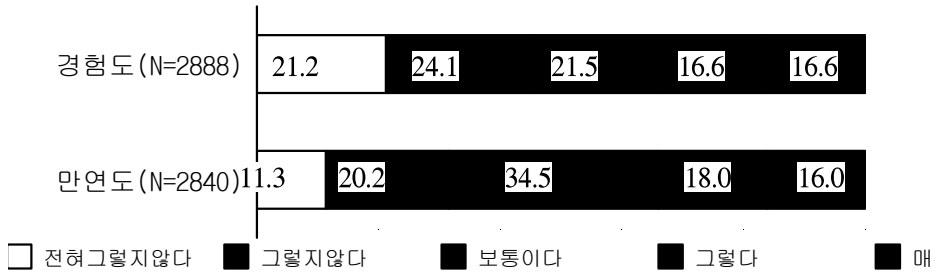
<표 계속>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③ SES(N=2,884)				
하		3.19 ^a	1.32	F = 9.02 ^{***}
중		2.95 ^b	1.27	
상		2.92 ^b	1.33	
④ 지역(N=2,861)				
서울		2.88 ^a	1.29	F = 7.96 ^{***}
광역시		3.11 ^b	1.23	
중·소도시		2.90 ^a	1.35	
군·읍·면		3.14 ^b	1.30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아플 때 양호실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8%였으며(‘그렇다’ 23.1%, ‘매우 그렇다’ 15.1%),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3%로 나타났다(‘그렇다’에 19.8%, ‘매우 그렇다’에 13.6%).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성별, 교급별, SES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군·읍·면이 서울과 중·소도시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표 III-11-3> 교실 냉난방 시설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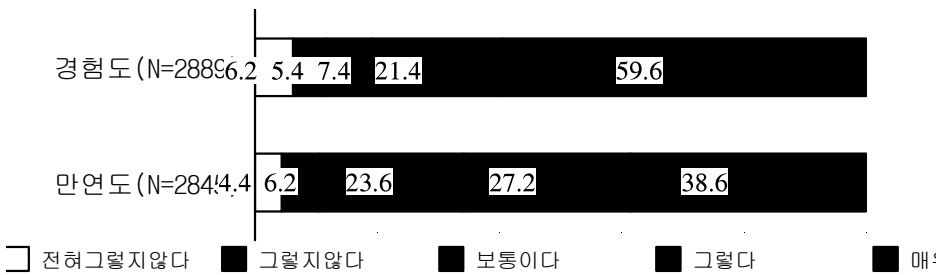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6)				
중학교		2.62 ^a	1.36	F = 27.66 ^{***}
인문고		2.86 ^b	1.31	
실업고		3.18 ^c	1.41	
② SES(N=2,873)				
하		2.96 ^a	1.42	F = 6.79 ^{**}
중		2.83 ^a	1.35	
상		2.65 ^b	1.40	
③ 지역(N=2,850)				
서울		2.66 ^a	1.35	F = 39.97 ^{***}
광역시		3.19 ^b	1.33	
중소도시		2.78 ^a	1.41	
군·읍·면		2.43 ^a	1.27	

** P<.01 ***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부에 지장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32%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6.6%, ‘매우 그렇다’

16.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4%로 나타났다(‘그렇다’ 18%, ‘매우 그렇다’ 16%).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교급별, SES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과 중류층이 상류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서울과 중소도시, 군읍면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



<표 III-11-4> 체육복을 교실에서 갈아 입은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7)				F = 32.67***
중학교		4.06 ^a	1.31	
인문고		4.33 ^b	1.07	
실업고		4.56 ^c	.79	
② SES(N=2,875)				F = 7.86***
하		4.35 ^a	1.12	
중		4.22 ^a	1.16	
상		4.07 ^b	1.31	

<표 계속>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③ 지역(N=2,853)				
서울		3.86 ^a	1.41	F = 31.61 ^{***}
광역시		4.22 ^b	1.17	
중소도시		4.43 ^c	.99	
군·읍·면		4.40 ^{bc}	1.03	
④ 교내 동아리활동 (N=2,834)				
예		4.29	1.14	t = 2.78 ^{**}
아니오		4.17	1.22	

P<.01 *P<.001, a, b, c, b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갈아 입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81%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1.4%, ‘매우 그렇다’ 59.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66%로 나타났다(‘그렇다’ 27.2%, ‘매우 그렇다’ 38.6%).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교급별, SES별, 지역별,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과 중류층이 상류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광역시와 중소도시, 군·읍·면이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한다.



<표 III-11-5> 학교의 두발 규제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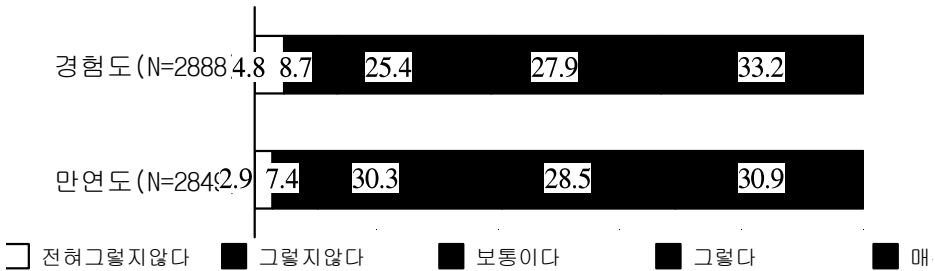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48)				
남		3.82	1.22	t = 2.82**
여		3.86	1.19	
② 교급(N=2,706)				
중학교		3.61 ^a	1.24	F = 42.62***
인문고		3.97 ^b	1.15	
실업고		4.15 ^c	1.10	
③ 지역(N=2,827)				
서울		3.56 ^a	1.28	F = 25.82***
광역시		3.89 ^b	1.12	
중·소도시		4.06 ^b	1.17	
군·읍·면		3.62 ^a	1.23	
④ 교내 동아리활동(N=2,810)				
예		3.91	1.19	t = 3.54***
아니오		3.75	1.20	

P<.0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학교의 잦은 두발 규제 경험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62%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2.8%, ‘매우 그렇다’ 39.6%),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동일하게 62%로 나타났다(‘그렇다’ 25.2%, ‘매우 그렇다’ 37%).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나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성별, 교급별, 지역별,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서울과 군·읍·면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계절의 변화에 따른 교복 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교복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표 III-11-6> 교복선택의 폭의 제한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0)				
남		3.69	1.16	t = -3.30**
여		3.83	1.12	
② 교급(N=2,726)				
중학교		3.65 ^a	1.18	F = 12.27***
인문고		3.82 ^b	1.12	
실업고		3.94 ^b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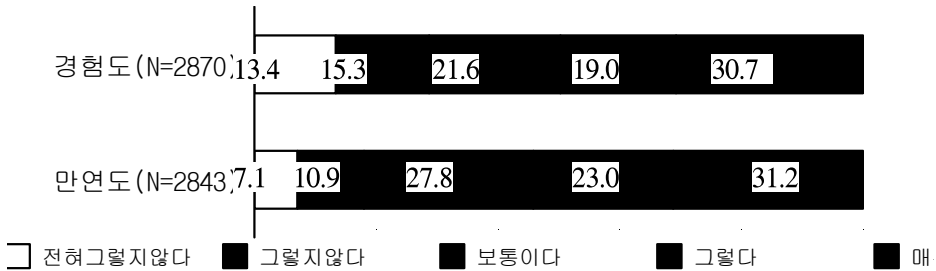
<표 계속>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③ 지역(N=2,850)				
서울		3.46 ^a	1.27	F = 24.35 ^{***}
광역시		3.83 ^b	1.06	
중·소도시		3.96 ^b	1.08	
군·읍·면		3.72 ^c	1.13	
④ 성적(N=2,800)				
상위 20% 이내		3.90 ^a	1.10	F = 5.64 ^{**}
상위 21%~40%		3.78 ^{ab}	1.15	
상위 41%~60%		3.71 ^b	1.15	
상위 61% 이하		3.67 ^b	1.17	

P<.01 *P<.001, a, b, c, a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계절의 변화에 따른 교복 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교복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61%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7.9%, ‘매우 그렇다’ 33.2%),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9%로 나타났다(‘그렇다’ 28.5%, ‘매우 그렇다’ 30.9%).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성별, 교급별, 지역별, 성적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군·읍·면에 비해 높게, 군·읍·면이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적이 상위 20%에 드는 학생들이 그 이하에 있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7.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다.



<표 III-11-7> 보충수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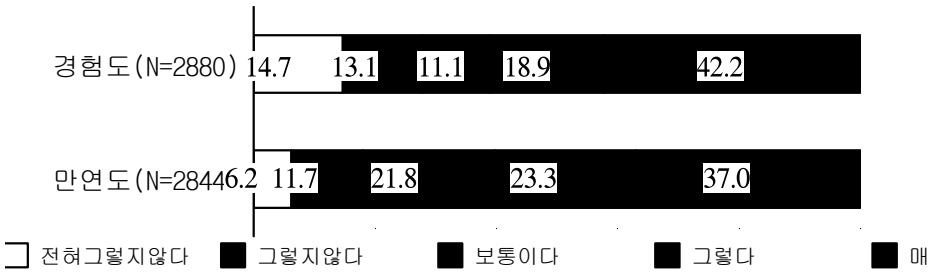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11)				F = 25.65***
중학교		3.24 ^a	1.38	
인문고 실업고		3.64 ^b 3.24 ^a	1.40 1.44	
② 지역(N=2,834)				F = 19.11***
서울		3.12 ^a	1.38	
광역시		3.28 ^a	1.41	
중소도시 군·읍·면		3.56 ^b 3.65 ^c	1.42 1.29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50%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9.0%, ‘매우 그렇다’ 30.7%),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4%로 나타났다(‘그렇

다’ 23.0%, ‘매우 그렇다’ 31.2%).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군·읍·면이 중·소도시보다 높았고, 중·소도시가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수업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선생님께서 혼나거나 압수당한다.



<표 III-11-8> 핸드폰 압수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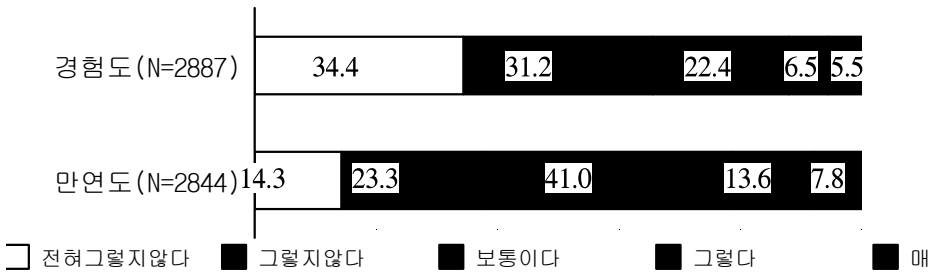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지역(N=2,845)				F = 73.54 ***
서울		3.09 ^a	1.53	
광역시		4.08 ^b	1.28	
중·소도시		3.67 ^c	1.50	
군·읍·면		3.21 ^a	1.5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수업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및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선생님께서 혼나거나 압수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61%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18.9%, ‘매우 그렇다’ 42.2%), 이

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60%로 나타났다 ('그렇다' 23.3%, '매우 그렇다' 37.0%).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광역시, 중소도시, 서울과 군·읍·면 순으로 광역시 청소년들이 이 문항에 대해 가장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자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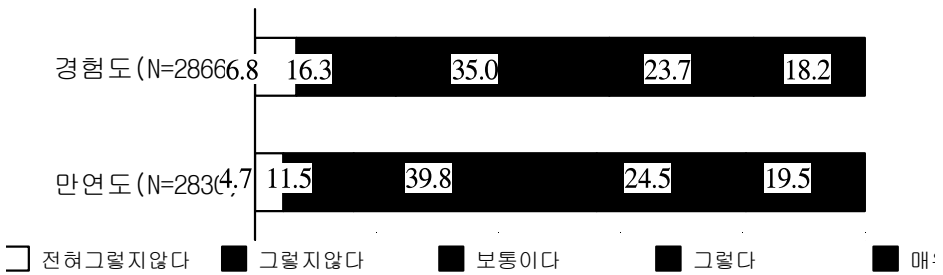
<표 III-11-9> 가방 및 소지품 검사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26)				F = 96.83***
중학교		2.01 ^a	1.08	
인문고		2.13 ^b	1.10	
실업고		2.92 ^c	1.18	
② 지역(N=2,850)				F = 37.49***
서울		1.84 ^a	1.04	
광역시		2.23 ^b	1.05	
중소도시		2.44 ^c	1.25	
군·읍·면		2.01 ^a	1.09	

***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가방, 소지품 등의 잦은 검사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2%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6.5%, ‘매우 그렇다’ 5.5%),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21%로 나타났다(‘그렇다’ 13.6%, ‘매우 그렇다’ 7.8%).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보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중소도시, 광역시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군·읍·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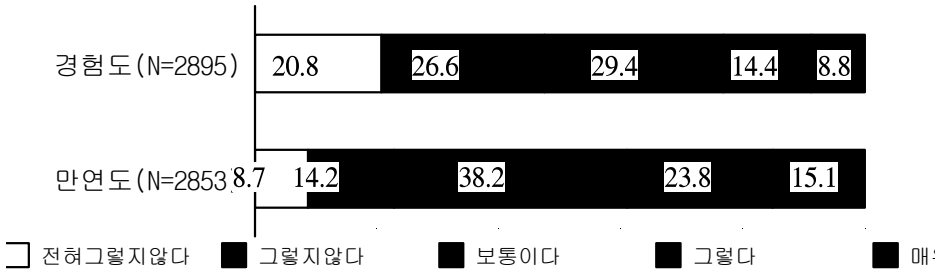
<표 III-11-10> 징계나 처벌시 입장 변호 기회의 부재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07)	중학교	3.17 ^a	1.16	F = 21.45 ^{***}
	인문고	3.36 ^b	1.12	
	실업고	3.58 ^c	1.11	
② 지역(N=2,832)	서울	3.25 ^a	1.20	F = 10.82 ^{***}
	광역시	3.35 ^b	1.11	
	중소도시	3.43 ^b	1.13	
	군·읍·면	3.07 ^c	1.14	

***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경험한 학생들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42%에 해당하였으며(‘그렇다’ 23.7%, ‘매우 그렇다’에 18.2%), 이러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44%로 나타났다(‘그렇다’ 24.5%, ‘매우 그렇다’ 19.5%). 즉,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보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 대해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 다음이 서울, 군·읍·면 순으로 나타났다.

11.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



<표 III-11-11> 외모로 인한 놀림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9)				
남		2.55	1.22	t = -4.35***
여		2.74	1.19	
② SES(N=2,882)				
하		2.89 ^a	1.24	F = 18.85***
중		2.57 ^b	1.17	
상		2.53 ^b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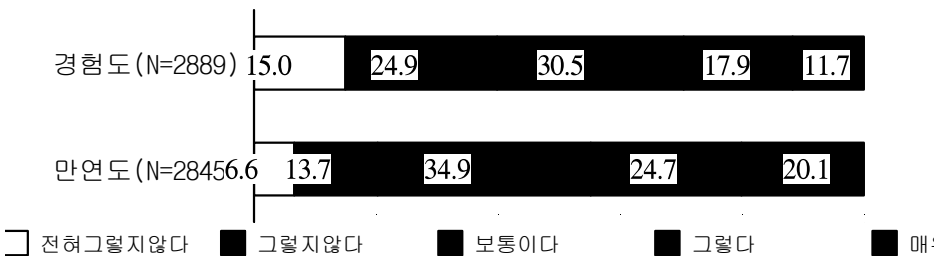
<표 계속>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③ 성적(N=2807)				
상위 20% 이내		2.69 ^a	1.20	F = 4.13 ^{**}
상위 21%~40%		2.54 ^b	1.17	
상위 41%~60%		2.74 ^a	1.22	
상위 61% 이하		2.57 ^a	1.24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3.2%가 외모나 신체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그렇다’ 14.4%, ‘매우 그렇다’ 8.8%). 그러나 조사대상 청소년 전체의 38.9%가 이러한 경험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도에 있어서 성별, SES별,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SES가 하류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중류나 상류층 청소년들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12. 학교에서 성적을 이유로 차별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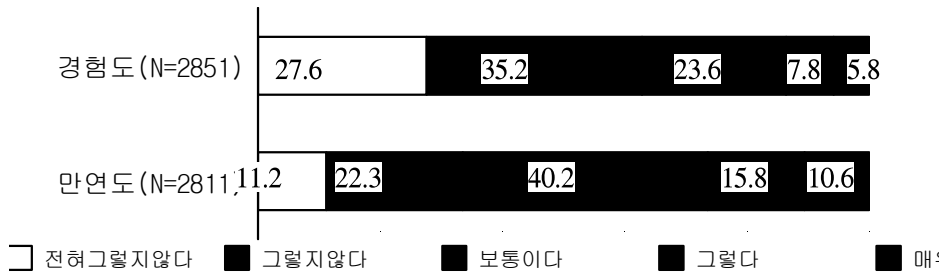
<표 III-11-12> 성적관련 차별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3)				
남		2.76	1.25	t = -4.94 ^{***}
여		2.98	1.17	
② 교급(N=2,730)				
중학교		2.71 ^a	1.24	F = 34.95 ^{***}
인문고		3.12 ^b	1.18	
실업고		2.74 ^a	1.14	
③ SES(N=2,876)				
하		3.01 ^a	1.25	F = 6.34 ^{**}
중		2.82 ^b	1.18	
상		2.83 ^b	1.28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전체의 29.6%가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었으며, 44.7%가 이러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SES 하류층 청소년들이 중류나 상류층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13.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주 체벌을 한다.



<표 III-11-13> 성적관련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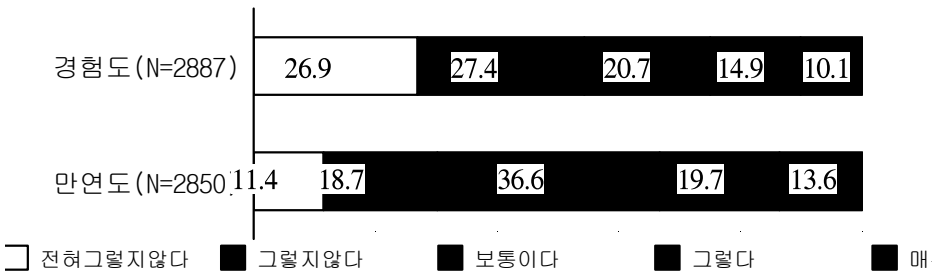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35)				
남		2.38	1.18	t = 4.76***
여		2.18	1.04	
② 지역(N=2,852)				
서울		2.17 ^a	1.12	F = 5.02**
광역시		2.35 ^b	1.08	
중소도시		2.35 ^b	1.17	
군·읍·면		2.20 ^b	1.08	
③ 성적(N=2,766)				
상위 20% 이내		2.18 ^a	1.12	F = 4.55**
상위 21%~40%		2.29 ^a	1.10	
상위 41%~60%		2.29 ^a	1.08	
상위 61% 이하		2.40 ^b	1.18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조사대상 청소년의 13.6%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주 체벌을 받는 인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반면, 26.4%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

보다,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 거주 청소년보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경험도 수준이 높았다.

14. 학교에서 체벌을 받을 때 손으로 나의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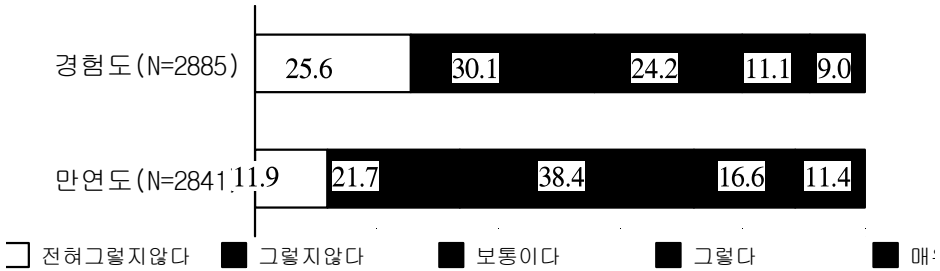
<표 III-11-14> 체벌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1)				
남		2.71	1.35	t = 7.42***
여		2.35	1.22	
② 교급(N=2,727)				
중학교		2.39 ^a	1.29	F = 12.82***
인문고		2.63 ^b	1.32	
실업고		2.67 ^b	1.22	
③ SES(N=2,874)				
하		2.68 ^a	1.31	F = 6.94**
중		2.47 ^b	1.28	
상		2.60 ^b	1.37	
④ 지역(N=2,852)				
서울		2.34 ^a	1.24	F = 11.63***
광역시		2.59 ^b	1.28	
중소도시		2.71 ^b	1.37	
군·읍·면		2.41 ^c	1.27	

P<.01 *P<.001, a, b, c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전체의 25%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 때 얼굴이나 또는 신체부위를 손으로 맞는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반면, 33.3%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다. SES의 경우 하류나 상류층 청소년들이 중류층 청소년보다, 그리고 광역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군·읍·면 혹은 서울거주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 수준이 높다.

15. 선생님은 자주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신다.



<표 III-11-15> 교사의 인신공격성 폭언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69)				
남		2.56	1.30	t = 3.87***
여		2.38	1.13	
② 교급(N=2,725)				
중학교		2.31 ^a	1.18	F = 23.14***
인문고		2.63 ^b	1.27	
실업고		2.63 ^b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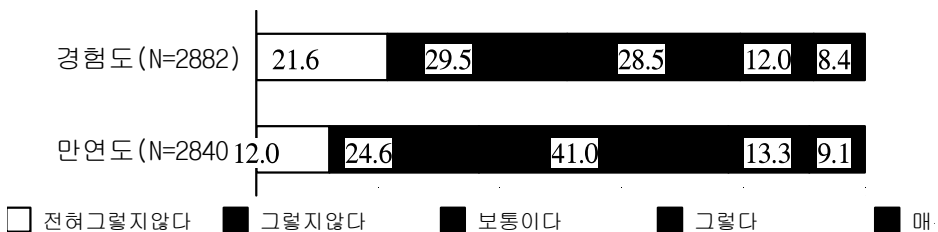
<표 계속>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③ SES(N=2,872)				
하		2.65 ^a	1.28	F = 13.07 ^{***}
중		2.39 ^b	1.19	
상		2.59 ^a	1.32	
④ 지역(N=2,849)				
서울		2.31 ^a	1.23	F = 5.83 ^{**}
광역시		2.49 ^a	1.18	
중소도시		2.59 ^b	1.30	
군·읍·면		2.48 ^a	1.22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전체의 20%가 선생님의 인신공격성 폭언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으며 28%가 이러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SES가 하류나 상류층 청소년들이 중류층 청소년보다,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 다른 광역시, 혹은 군·읍·면 거주 청소년보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 수준이 높았다.

16. 학교내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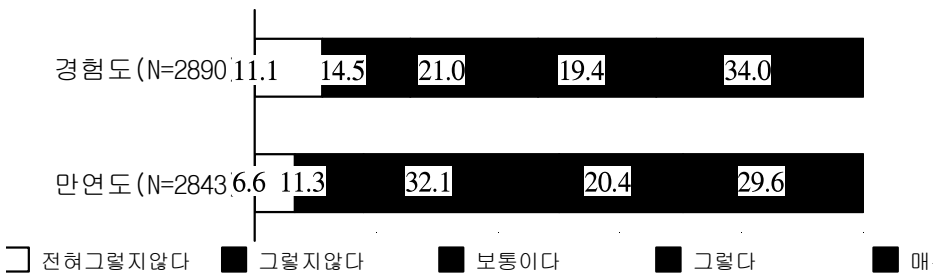
<표 III-11-16> 학교동아리활동 권리침해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SES(N=2,869)				
하		2.67 ^a	1.19	F = 6.50 ^{**}
중		2.51 ^b	1.17	
상		2.62 ^a	1.29	
② 교내 동아리활동(N=2,828)				
예		2.47	1.20	F = -3.75 ^{***}
아니오		2.64	1.17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전체의 20.4%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경험이 있으며, 22.4%는 이러한 권리침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차이를 보이는데 SES 하류층이나 상류층 청소년들이 중류층 청소년보다, 교내 동아리 활동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는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도 수준이 높다.

17. 학교내 급식은 가격에 비하여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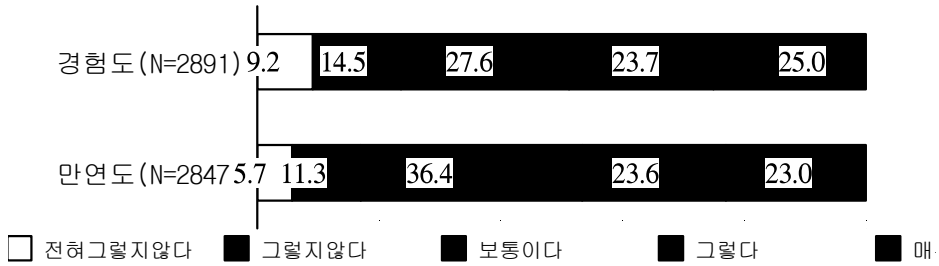
<표 III-11-17> 학교급식 불편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4)				
남		3.36	1.40	t = -6.41 ^{***}
여		3.68	1.32	
② 교급(N=2,725)				
중학교		3.24 ^a	1.40	F = 60.33 ^{***}
인문고		3.85 ^b	1.30	
실업고		3.63 ^c	1.28	
③ 지역(N=2,854)				
서울		3.26 ^a	1.41	F = 34.33 ^{***}
광역시		3.82 ^b	1.28	
중소도시		3.55 ^c	1.36	
군·읍·면		3.17 ^d	1.40	

***P<.001, a, b, c, d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조사대상 전체 청소년의 53.4%가 학교급식이 가격에 비해 메뉴가 좋지 못한 불편함을 경험하였고, 50%는 이러한 불편함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의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 중소도시, 서울, 그리고 군·읍·면 순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18. 학교에서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상담할 선생님이 없다.



<표 III-11-18> 상담선생님 부족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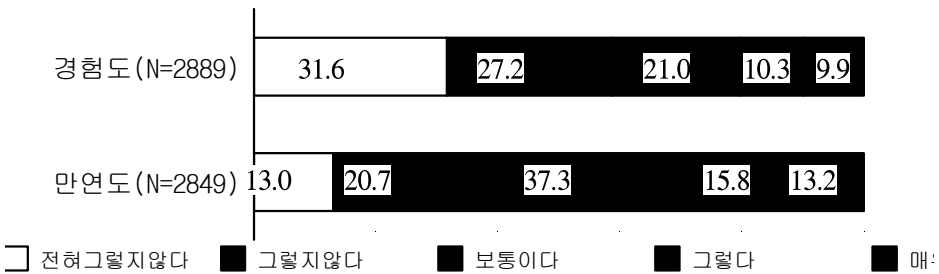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성별(N=2,875)				
남		3.31	1.13	t = -7.10***
여		3.65	1.10	
② 교급(N=2,735)				
중학교		3.17 ^a	1.31	F = 54.24***
인문고		3.70 ^b	1.15	
실업고		3.51 ^b	1.17	
③ SES(N=2,878)				
하		3.54 ^a	1.24	F = 5.00**
중		3.38 ^b	1.23	
상		3.32 ^b	1.36	
④ 지역(N=2,855)				
서울		3.22 ^a	1.33	F = 6.22***
광역시		3.48 ^b	1.21	
중·소도시		3.48 ^b	1.24	
군·읍·면		3.41 ^a	1.27	

P<.01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조사대상 전체 청소년의 48.7%가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어서 불편함을 경험하며, 46.6%는 이러한 불편함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

정도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SES 하류층 청소년이 중·상류 청소년보다, 그리고 광역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보다 이러한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19.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학급 또는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표 III-11-19> 성적공개 경험도의 집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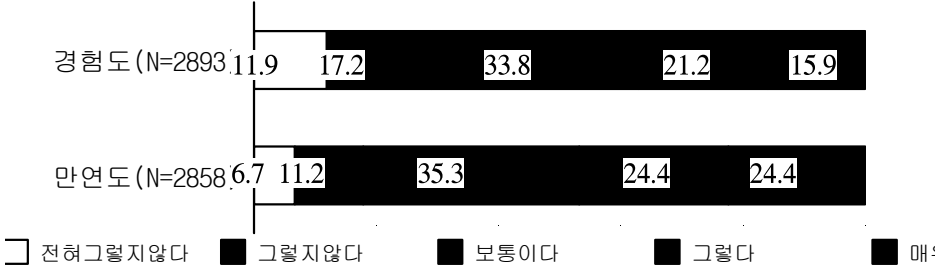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지역(N=2,853)				
서울		2.11 ^a	1.18	F = 17.64 ^{***}
광역시		2.53 ^b	1.31	
중소도시		2.52 ^b	1.33	
군·읍·면		2.28 ^a	1.26	
② 성적(N=2,801)				
상위 20% 이내		2.19 ^a	1.23	F = 10.71 ^{***}
상위 21%~40%		2.34 ^a	1.28	
상위 41%~60%		2.52 ^b	1.29	
상위 61% 이하		2.51 ^b	1.35	

***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조사대상 청소년의 20.2%가 성적을 공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전체의 29%가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

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데 광역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 보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도가 높았다.

20. 학급 임원 및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표 III-11-20> 학교임원 선출시 성적 작용 경험도의 집단차

집 단	통계치	\bar{X}	SD	차이검증 통계치
① 교급(N=2,734)				
중학교		3.14 ^a	1.25	F = 9.04 ^{***}
인문고		3.19 ^a	1.16	
실업고		2.85 ^b	1.21	
② 지역(N=2,858)				
서울		2.98 ^a	1.29	F = 9.15 ^{***}
광역시		3.24 ^b	1.15	
중·소도시		3.17 ^b	1.24	
군·읍·면		2.96 ^a	1.19	
③ 성적(N=2,805)				
상위 20% 이내		2.97 ^a	1.23	F = 6.11 ^{***}
상위 21%~40%		3.09 ^a	1.24	
상위 41%~60%		3.20 ^b	1.16	
상위 61% 이하		3.21 ^b	1.23	

***P<.001, a, b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임.

조사대상 청소년의 37.1%가 학교입원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46.8%는 이러한 일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도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4. 조사 결과 요약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및 고충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구체적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는 실태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중학교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의 만연성 정도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제 경험도와 만연성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생활영역별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는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도와 만연도는 학교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지역사회 생활, 그 다음은 가정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집단차이를 보였는데 성별과 SES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각 영역별로 집단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양친가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보였으며, 지역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교급별, 거주 지역별 차이를 추가로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전체 총점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각 문항별 분석 결과는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 한다. 각 생활영역별로 문항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가정생활에서 측정된 14가지 인권침해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내용은 부모님이 성적을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과,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30%가 이러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성적차별의 경우 전체의 64%, 아침식사의 경우 전체의 51%)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위는 부모님 눈치가 보여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 없는 것으로 전체의 20%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으며, 역시 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전체의 35%)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 교급, SES,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양친가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권침해 내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침해를 받고 있었다. 성적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와 차별 받는 것,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는 것, 성적으로 인한 체벌을 받는 것,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것, 친구에 대한 간섭, 두발 간섭 등의 경험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못하는 고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성적과 관련하여 차별과 체벌을 받고,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는 인권침해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들 간에도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인문고생은 실업고생 혹은 중학생에 비해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거나, 친구관련 사생활에 대해 부모의 간섭을 받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실업고생은 아침식사를 못하거나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못 받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일을 많이 하는 고충을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SES별로는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못 산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나 혹은 중간보다 잘 산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으로 살고 있다

고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도 청소년의 가정생활 영역 인권침해 경험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의 학력인 경우보다 집에서 부모님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설 수 없고, 친구와 관련된 사생활의 간섭을 받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반면에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거나,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여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못 내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일을 많이 하는 고충은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양친가족의 청소년들과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영역의 인권침해 내용 중에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것,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부모님께서 제때 못 주시는 것,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 일을 많이 하는 인권침해 경험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 부모 가족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2)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지역사회생활에서 측정된 15가지 인권침해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은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58%가 경험하고 있었다. 63%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52%가 경험하고 있었으며, 53%가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 참여 때 부모나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눈치가 보여 빈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것과 같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45~48%이었다. 그 다음은 대중매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처음 만나는 성인이 반말하는 것,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 아르바이트시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같

은 인권침해 경험을 30%~39%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과 관련된 인권침해는 20%~27%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사회생활 영역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성, 교급, SES,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사회생활 인권침해 내용에서 교급과 지역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교내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에서 교급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침해 경험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고민이 있을 때 상담기관이 없는 것, 저녁시간 외출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받는 것과 같은 고충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부족, 지역사회 동아리활동 참여시 부모나 학교로부터의 제재, 처음 만나는 성인이 반말을 하는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의 부족, 저녁시간 외출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 아르바이트시 노동시간 및 조건에 대한 불이익, 아르바이트 초과수당 미지급, 음란, 스팸메일을 받는 것,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파적 보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한편,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과 같은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SES별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못사는 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이나 중간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집단차이를 보인 인권침해의 내용은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 및 공간의 부족, 지역의 동아리활동 참여시 부모나 학교로부터의 제재,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이 없는 것, 아르바이트시 노동시간과 조건에 대한 불이익, 아르바이트 초과수당 미지급,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받는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거주 청소년이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적 폭력, 강제적 자율학습 등 학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높았고,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이 더 높았다. 반면에 광역시나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기관이 없는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3)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

학교생활 영역에서 측정된 20가지 인권침해 문항 중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인권침해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내용은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교실과 화장실에서 갈아 입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81%가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휴식이나 이동시간에 핸드폰 이용시 선생님께 혼나거나 압수, 가격에 비해 급식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의 순으로 50%~62%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간부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를 30%~49%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소지품 검사,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차별, 선생님의 체벌이나 폭언,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의 권리가 없는 것, 성적계시와 같은 인권침해를 10%~20% 내외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성, 교급, SES, 지역, 성적,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차를 보이는 인권침해 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두발규제, 교복선택의 폭이 좁은 것, 외모 때문에 놀림 받는 것, 성적 때문에 차별 받는 것, 급식 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못한 것, 고민을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체벌이나 선생님의 폭언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겨울에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 성적을 이유로 차별 당한 것, 급식메뉴나 반찬이 다양하지 않은 것,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것,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탈의실이 없는 것, 두발규제, 교복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소지품 검사 받는 것, 처벌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것, 체벌과 같은 고충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중학생은 측정된 거의 모든 인권침해 문항에서 고등학생보다 경험도가 낮았지만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정도는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SES별로는 하류층 청소년들이 화장실 온수, 양호실, 냉난방, 급식 등 학교 시설 관련 불편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경험도와 학교체벌관련, 그리고 성적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관련 인권침해 경험도가 중류나 상류층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낮았다. 이를테면 서울 거주 청소년들은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교시설관련, 복장관련, 그리고 성적으로 인한 체벌이나 자율학습의 선택권 등의 인권침해 경험도가 더 낮았다. 한편,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내용에 있어서 서울 거주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험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광역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관련 인권침해의 경험도가 서울이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들보다 대체로 높다.

학교성적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들은 성적과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상위 40% 이하의 청소년들이 그 이상의 청

소년들보다 성적 공개로 인한 수치심, 학교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의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다르지 않았으나 교내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몇 가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내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 정도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5. 시사점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서의 경험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지역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영역의 순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주 대상이 우선적으로 학교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세 가지 생활 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경험도와 그들이 지각한 만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가정생활 영역이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적을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30%였으나 이러한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64%였다. 지역사회생활과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경험도와 만연도에 있어서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 영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험도와 만연도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적인 경험이므로 자신의 경험을 남의 경험으로 표현하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둘째는 좀 상반된 해석인데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다고 볼 때 전자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개별상담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 가지 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는 성별, 교급별, 가정경제 수준별, 거주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학적 변인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이나 가족의 구조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더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성적별, 교내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인권침해 경험도에 있어서 교외 동아리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생활영역별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소년들의 하위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생활 영역에서 어떤 하위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시하겠다.

다음은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청소년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각 영역별로 고려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정생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하위집단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남학생이다. 그리

고 중학생은 가정에서의 성적관련 체벌과 차별관련, 인문고생은 사생활관련, 그리고 실업고생은 가정경제와 관련된 복지 관련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가족의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이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가족이나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서 인권침해 경험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개별적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지원의 수혜자는 우선적으로 남학생, 실업고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은 원하지 않는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것과 지역사회에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부족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이었다. 앞에서 제시한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사항과는 달리 이러한 문제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관련 기관에서는 정보 통신분야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청소년기에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하위집단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여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청소년, 그리고 서울거주 청소년들이었다. 특히 서울거주 청소년들은 광역시, 중소도시, 혹은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유해업소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히, 서울 소재 학원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생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 혹은 고충 사항은 탈의실이 없는 것, 겨울철 화장실 온수시설이 없는 것, 두

발과 교복에 대한 제한, 선생님께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것, 학교급식 품질이 낮은 것, 그리고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이 없는 것 등으로 시설 미비로 인한 고충사항이 가장 컸다. 시설미비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외한 두발과 교복 자율화, 그리고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의 문제는 예산 투자가 없이 학생, 교사,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중재자로서의 청소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교생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 하위집단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성적과 관련한 체벌과 차별의 인권침해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그리고, 학교의 기본적 시설의 미비, 두발과 교복 자율화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시설 미비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한편, 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시나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시설관련, 체벌관련, 그리고 학습의 선택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내용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개별적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지원의 수혜자는 우선적으로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청소년, 그리고 광역시와 중소도시 소재 학교의 청소년들이어야 할 것이다.

IV.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1. 조사의 개요
2. 조사의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IV. 소수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4장에서는 소수 청소년(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 학교(근로 청소년의 경우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소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또는 사회에 바라는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소수 청소년(근로, 장애, 북한이탈)들이 가정, 지역사회, 학교(직장)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들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대상

이 조사의 면접 대상자는 3집단(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면접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평균 연령은 18.3세(16세~22세) 이었다. 면접 대상자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 청소년의 경우 5명(남: 3명, 여: 2명)으로, 이들의 연령대는 16세~20세 이었다. 장애 청소년은 16세부터 22세의 6명(남: 5명, 여: 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집단은 17세부터 20세까지의 5명(남: 3명, 여: 2명)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 과정 및 내용

소수 청소년들의 심층면접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2005년 12월 2일 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즉 가정, 지역사회, 학교(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소수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우선 집단 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집단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많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2. 조사의 결과

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정, 지역사회, 학교(직장)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실태와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 청소년

(1) 근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근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를 다니는 형제와의 비교 또는 차별,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감당하기 힘든 집안 일, 기타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경험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 청소년

년들의 가정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예를 들어,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 경제적 문제, 본인의 가출 등)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를 다니는 형제와 비교 또는 차별을 받는 경우는 적었으며, 이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였을 때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부모의 불화나 다툼은 자녀에게 심리적,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① 학교를 다니는 형제와의 비교 또는 차별

면접 대상 근로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다른 형제와 특별한 차별 대우나 비교를 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한 사례에서만 학교를 다니는 형제와 다른 차별 대우를 경험하였을 뿐이다. 차별 대우를 받았던 상황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려고 돈을 요구하였을 때 학교를 다니는 동생에게는 문제집을 살 돈을 주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피면접자는 학교를 다니는 형제와의 차별 대우가 아닌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의 사이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동생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고1 때 자퇴하여 18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새엄마는 동생보다는 저한테 더 심하게 말합니다. 동생이 공부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겠다고 하면 사주지만,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문제집을 사려고 하면 “학교도 안 다니는 게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차별한 적이 있어요(0100).

할머니랑 오빠들이랑 사는데 오빠들은 집에서 일도 안하는데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만 일을 시키고 소리를 질러요. 오빠들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데 저는 잘 안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오빠가 밤

에 들어와서 밥 차리라고 잠자고 있는데 저를 깨워서 제가 짜증을 내면 할머니는 그 때도 오빠한테 말대꾸한다고 혼내셨어요(신00).

②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근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욕을 들었던 경험은 대부분의 피면접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주로 큰소리나 고함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폭언이나 욕을 듣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났다.

저는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아침에 학교가라고 깨우시면 제가 쉽게 깨지 않으면 키우는데 헛되게 키웠다고 하시고... 학교에서 말썽피우고 학교에 불러 오시면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집에 가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세요. 너 같은 거 키워도 소용없고, 힘만 드니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잘못했다고 울면 니가 뭘 잘했다고 우냐고 또 소리치시고 그래요(신00).

내가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주로 단순한 일에서도 큰소리를 내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시절 건망증 때문에 까먹었던 일들 때문에 너는 니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고 많이 혼내셨어요. 그 외에는 집에 늦게 들어 온 다던가 오락실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하00).

③ 부모의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의 부모들은 다툼이나 싸움을 많이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들 부모가 주로 싸우는 이유는 자녀들 문제보다는 집안 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불화나 잦은 싸움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자녀의 가출이나 우울 증상과 같은 행동적,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좋지 않은 집안 분위기로 인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사정 때문에 많이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는 큰소리로 말하니 아버지는 짜증내시는 일이 많았어요. 가끔은 그냥 막 집을 뛰쳐나가시기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면 집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로 저와 누나에게 돌아온 것은 가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으로 두 분 다 신경이 곤두서면 화풀이 대상이 누나와 나였기 때문에 나와 누나는 스트레스만 쌓이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하00).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다투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지장을 많이 줍니다. 가끔씩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분위기 안 좋으면 서울에 돌아와서도 일도 잘 안되고 신경이 집에 가있으니까 실수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혼날 때도 있습니다(이00).

④ 과중한 가정 문제로 인한 부담

근로 청소년들이 가정불화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강요로 일을 하거나 가정의 경제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신의 가출로 인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용은 제가 스스로 벌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일이니까 스스로 하는 편입니다(이00).

⑤ 기타 가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정생활에서 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하

여 자녀가 심리적인 상처를 받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자녀에게는 허락되는 행동이 여자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아 (예를 들어, 친구 집에서 자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등) 남녀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랑 살아서 할머니는 오빠를 더 좋아해서 오빠랑 저랑 차별이 좀 심해요. 놀러갈 때도 저한테는 항상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하면서 캐물으시고... 그럴 땐 정말 짜증나요. 예를 들면 오빠들이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해도 알겠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하세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눈치 보면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지낼 수는 없잖아요...그런 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신00).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준비물이나 필요한 물건에 대해 말하면 이유 없이 혼나곤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묻고 돈이 없으면 미안하다고 따뜻한 말로 말했으면 됐을 걸 우리 집에 돈이 어딴냐고 딱딱히 말하니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습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도 별로 말 안하는 성격으로 변해 버린 것 같습니다(하00).

(2) 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지역의 시설,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았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상처나 고민에 대해서도 알아주기를 원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도 부족

하였다. 또한 직장에서의 근무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이용할만한 청소년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①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근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리거나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함부로 취급받고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무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나쁜 일이 발생하거나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예를 들어, 물건이나 돈이 없어졌을 때)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거나 무시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문제로 “니가 어린데 뭘 할 수 있니?”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는 제 또래의 아이들 보다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씩은 ‘내가 어리니까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0100).

가출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일일이 집이 있는데 왜 가출했는지 학교에서 왜 짤렸는지 이런 걸 물어 보는 게 싫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고 저한테 따지는 일도 있었습시다. 그럴 때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하00).

②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모든 근로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이나 스팸 메일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정도도 너무 심하여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역겹고, 짜증나며,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삭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이나 스팸 메일 같은 경우... 역겹고 토하고 싶어요(이00).

너무 많이 오고 예전에 들어가 본적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게 되고 이제는 제목만 봐도 스팸 메일인지 알기 때문에 별 감정 없이 지웁니다. 지워도 지워도 계속 와서 짜증나기는 하지만 화낸다고 그만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이00).

③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모든 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묘사에 대해 잘못되었고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즉,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을 무조건 나쁜 아이로 묘사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나름대로 상처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돈을 버는 것이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뉴스, 드라마, 신문 등을 잘 보지 않아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일진회라는 아이가 나올 때 항상 무조건 나쁜 아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도 학교나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므로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충 드라마에서는 괜히 반에서 일진회 애들은 주인공하고 착한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러잖아요. 화나면 선생님한테 개기고.... 학교 나가버리고 부모님한테도 막 대들고.. 근데 실제로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신00).

뉴스나 신문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 본 적은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려고 알바라도 하는 애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충 일해서 때우고 돈 벌러 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 목표가 있고 다만 그 목표 전에 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니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또 돈을 번다고 해도 유희비에 쓰고 막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0100).

④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근로 청소년들 중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여가를 즐기는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장에서 근무 후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청소년출입가능업소라 하더라도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동네의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어디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가를 즐길 수 없었다. 한편, 가출을 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며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쉼터에서 제공하는 숙식 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의 제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쉼터 이외에는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공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용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를 하거나 알바를 끝냈을 때 놀러 가려고 하면은, 청소년출입가능업소라고 해도 10시까지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놀고 싶어도 그냥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놀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출입가능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11시까지 늘려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도 저도 놀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0100).

일을 하면서 여가활동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그런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내가 알기론 무료로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을 [춤이나 노래 같은 거]알려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터에서 먹고, 쉬고, 자는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하00).

⑤ 학생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

근로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무조건 나쁜 아이로 보거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여도 놀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공부를 왜 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학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어른들은 무조건 나쁜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구하려고 해도 놀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돈을 벌어서 제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이00).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을 다니 면은 “학교도 안다니는 게 무슨 공부를 해!” 라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학교도 안다닌다고 무조건 공부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지금 미용실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이00).

학교 안다니는 제 친구가 그냥 싸움을 해서(왜 쳐다보냐고 하다가) 파출소에 갔어요. 근데 경찰이 학교 다니는 친구한테는 별말 안하고 제 친구한테는 막 뭐라고 하면서 다 니가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똑같이 싸웠는데.. 학교 다닌다고 봐주는 것 같다고 친구가 그랬어요(신00).

(3) 근로 청소년이 직장생활(또는 아르바이트)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근로 청소년이 직장생활(또는 아르바이트)을 하면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동착취 등의 부당한 대우,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경험한 언어적, 행동적 폭력,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당한 경험, 기타 부당하게 경험한 인권 침해 등이다. 근로 청소년들은 직장생활(아르바이트)을 하면서 계약 조건과 다른 일을 하거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오랜 동안 휴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의 조건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대부분의 근로 청소년들이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노동착취 등의 부당한 대우

근로 청소년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에서 계약이나 일을 시작할 때의 조건과는 다른 일을 하거나 근로 시간이나 임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였으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정된 근로 시간보다 일을 더 하거나 오랜 동안 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지만 쉬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말도 꺼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배달 일이나 주유소 전단지 일을 해 본적 있습니다. 배달 일이나 주유소에서는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전단지 돌리는 일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직 했는데... 처음엔 아파트나 주택가에 돌리는 일이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처음엔 주택가나 아파트에 돌렸는데 얼마 지나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서... 마침 여름이었고, 땀벌에서 사람 붙잡고 전단지를 돌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하00).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는 적었지만, 쉬는 날이 있어 근로일이 더 늘어날 때는 있어요. 주차요원 일을 할 때,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하지만 이주가 넘게 하루도 못 쉬고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쉬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0100).

②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

모든 근로 청소년들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일정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일을 그만 두었을 때 급여를 주지 않고 자꾸 미루어 지급하고, 일하는 도중에 실수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하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부당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경우는 언어적인 폭력과 무시에 대항하여 좋지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열흘정도 하고 그만둔 적이 있는데 돈을 주면서 “이거 안줘도 되는 건데 어쨌든 돈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라”하면서 생색내면서 줬는데, 그 때 열흘 동안 일한 돈을 준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언제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미루고 또 갔더니 또 미루더라고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0100).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 주유소에서 한 달 동안 60만원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요. 첫 경험이라 실수도 많이 했는데 사장님이 화내고 욕하고 그때마다 월급에서 빼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월급이 깎여서 결국엔 4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요(신00).

피자집에서 일할 때 수급 때 돈이 비는 경우 공동부담으로 50%씩 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돌리는 일이 힘들고 부당해서 그만둘 때 원래 받을 돈이 8만원인데 5만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냥 그만두는 거라서 별말 못하고 그냥 받았습시다(하00).

③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경험한 언어적, 행동적 폭력

모든 근로 청소년들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언어적, 행동적 폭력이나 무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무시하고, 실수를 하면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성인의 질책에 대꾸할 경우 욕을 하거나 무시하고 괘시하는 등 다양하고 많은 부당한 경험을 하였다.

위에 말한 친구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때마다 사장이 와서 시켜줬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학생이라 불쌍해서 시켰더니...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심한 말도 하고 때린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무릎을 차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욕하고...그래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었어요(신00).

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윗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내 어린나이를 우습게 봤었는지 제가 하는 일마다 제지를 하고 그 일을 우습게 여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한마디만 날리면 그 사람들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무시와 괘시를 받으면서 저는 일을 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정00).

④ 근로계약서 작성

대부분의 근로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를 빌미로 임금을 적게 주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 쉼터의 지도교사가 함께 했을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없었다.

무조건 자신 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첫 달에는 조금 주고 그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든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언제까지는 일해야 하지 않냐! 는 식으로...그만 두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이00).

⑤ 기타 부당하게 경험한 인권 침해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권침해 경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부당한 대우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거부했을 때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같은 직장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등 많은 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음식점에서 일을 했을 때 여자라서 힘든 일을 안 시킨다고 했지만 손님들이 오면은 서빙을 하면서 손님이 술을 따르라고 하면, 싫다고 거절해도 사장님이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는 앉아서 같이 술도 마시라고 권유를 했데요(0100).

제 친구 중예요. 패스트 푸드점에서 설거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니저가 밤늦게까지 일시키고, 데려다 준다고 해서 거절하면 그 다음 날 진짜 힘든 일시키고 돈 안주고 일시키고 그랬데요. 사람들 없으면 팔을 만지기도 하고 해서 너무 싫어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돈도 못 받고 뛰쳐나왔는데요. 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매니저 편만 들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0100)

사람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며 일하는 직장에서 한 사람만을 따돌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시간 에도 저만 따로 먹게 될 때가 있고, 저한테 잘 말 걸지도 않는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일을 찾을 때에도 겁나기도 합니다(정00).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조금 망가지고 저도 좀 다쳤는데 사장님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하는 비용을 월급에서 깎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하00).

나이 때문에 다른 알바생들보다 돈을 적게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쓰기 꺼려하는 건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힘들거나 계약조건이 달라도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참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00).

(4) 근로 청소년이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

근로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자신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비판의 말보다는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노력

둘째, 대중매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의 실시

셋째, 합당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넷째,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위하여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14살~16살 정도의 아이들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린 청소년들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 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다시 제정하여 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00).

우리나라는요. 청소년에 대한 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청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심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pc방 등의 일자리를 구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소년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걸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말바꾸고 그러잖아요(신00).

사람은 누구나가 평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출해서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비판의 말만 하는 것보다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바로 잡아줄 희망을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정00).

일을 할 때 나이를 불문하고 인권을 침해 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전화라든가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알아도 신고를 못합니다. 사장이 두렵거나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확 그만뒀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인거 같기도 하고요. TV에서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주 방송에 내보내거나 홍보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도움을 받지 않고 풀라고 하면 자신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하00).

2) 장애 청소년

(1) 장애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장애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학교 성적을 이유로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간섭,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기타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경험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과 같이 학교 성적이나 공부를 이유로 형제나 또래와 비교당하고 차별을 받았으며,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도 부모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모로부터 욕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주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에게서 받는 동정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① 학교 성적을 이유로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청소년들 역시 공부나 성적 문제로 부모의 간섭이나 비교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같은 또래의 친척집 자녀나 이웃의 친구와 비교하거나, 잘하는 형제와 비교하면서 야단과 꾸중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농담처럼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쌍둥이 형제 중 공부를 잘하는 형제와 비교하여 너 쌍둥이 맞니? 너는 어디 갈거야? 등). 부모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장애 청소년들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은 부모가 공부와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놀거나 쉬기 어렵다고 하였다.

부모님은요. 특히, 엄마는 성적에 무척 예민하신 것 같아요. 성적 이 나오면 너 동생은 몇 등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노골적으로 무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갈거냐고 하시면서... 또, 같은 또래의 친척집 친구나, 이웃 친구들과 막 비교하시면서 심하게 꾸중을 하세요(김00).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사춘기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나 원광대 갔는데... 짝소리 못하게 넌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 가야한다. 무조건 가야한다 그거 아니면 대학갈 생각 하지마라. 그렇게 말하시죠. 컴퓨터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정말 귀찮죠... 놀고 싶어도 그런 말 때문에 제대로 놀 수가 없어요(박00).

②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간섭

부모들은 자녀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하며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의 머리가 길다든지, 왁스나 젤을 바른다든지, 나뭇대로의 멋이나 개성을 표현하려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강제적으로 자녀를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기준에 맞게 머리를 깎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외출하려고 할 때)에도 강제로 다른 옷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에 대해 장애 청소년들은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두발이나 복장은 자신의 개성 표현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억압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짜증, 말다툼, 자존심의 손상을 느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요즘 청소년은 왁스, 젤, 무스라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르고 싶죠. 저의 친구들이나 저는 왁스를 발라요. 왁스를 발라 머리를 멋있게 하고 나면 정말 기분 좋아요. 원상복귀 하려면 머리를 한번만 감으면 되요. 그런데 부모님은 “너 자다가 일어났어? 머리가 그게 뭐냐? 머리가 거지같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어차피 머리 한번 감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걸가요? 제가 꾸미고 다니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요? 학교 갈 때 지장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 해요(박00).

제가 외출을 할 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추리닝을 입으라고 억지로 입혀서 추리닝을 입고 나갔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저를 아직도 어리게만 보셔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안00).

③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장애 청소년의 부모들은 대개 자녀에게 고함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학교 성적이나 부모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어떤 장애 청소년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거나 몸자세를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잦은 부탁을 한다고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부의 다툼에 대한 분풀이를 자녀에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수발을 드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화장실 사용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부탁에 대해 욕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 하겠다.

저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힘으로 모두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몸자세를 바로 해달라고 자주 하면 짜증과 폭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충분히 짜증을 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폭언을 하신다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이 싸우시면 그 피해자는 언제나 저예요. 격화된 감정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오기 때문이에요(김00).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욕을 하시구요 뭐를 시키셨는데 제대로 못했을 때 너는 그것도 못하니 하고 욕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학교성적을 나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며 부모님께 말 덧붙이면 같이 싸워요. 그러다 보면 서로 화가 나서 몇날 며칠 말을 안 해요(나00).

④ 부모 간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부모의 다툼이나 불화는 주로 부모의 성격이나 의견 차이, 자녀의 진로나 성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의 다툼은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즉 부모의 다툼은 자녀에 대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좋지 않은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녀는 친구와 다투거나 심리적인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자녀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간에 다투는 것은 결코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툼을 하시는 경우는 성격차이나 의견충돌로 시작되는데, 결국 나중에 극한상황까지 가면 저는 학교에서 학습적인 것,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의욕을 잃게 되요. 그럼 저는 “오늘 너 많이 우울해 보인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들어요. 그 때 저는 정말 우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집을 나갈 수 없다는 게 한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다투실 때 저를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예요(김00).

카드 값 고지서가 나왔을 때 자주 싸우시고 저의 학교성적 때문에도 많이 싸우세요. 저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을 잘 내요. 그러다보면 같은 반 친구와 다투게 되고, 폭력을 사용해요. 서로 폭력을 하다 보니 눈도 찢어지고 머리를 다친 적도 있어요(나00).

⑤ 기타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경험

장애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보다는 자신에 대한 동정적인 눈빛, 행동, 말 등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보다는 가끔씩 만나는 친척들에 의해 이러한 상황이 유발되었다. 집안의 큰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든지,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동정어린 눈빛,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며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동정적인 행동은 오랜 동안 장애인과 같이 생활한 식구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가끔씩 만나는 사람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먼 친척들 중에 한 분이 결혼하신 다던가 하는 집안에 큰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식이 좋지 못하듯이 가족들 중에도 그러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김00).

전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안 좋아해요. 제방에 들어와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옷 갈아입는데 자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절 바보라 생각하나 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거나 말할 때 꼭 이렇게 말하며 대신 다 해버리세요. “너 혼자 어떻게 하니 내가 해줄게”(0100).

(2) 장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장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지역의 시설,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기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 청소년들은 지역의 시설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매체 역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①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지역의 시설

지역사회에서 장애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는 기본적인 시설(예를 들어, 병원, 서점, 도서관 등)조차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은 더 더욱 열악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들은 도서관, 병원, 학교 등의 시설에 있는 계단이나 턱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장이 나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을 가거나, 극장을 갈 때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는 램프라던가 승강기 같은 시설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학원도 그런 시

설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 6~70%가 시설부족으로 대학을 중퇴한다고 하는데, 저도 앞으로 대학을 가야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은 충분한 재능이 있어도 그걸 발휘할 수가 없어요(김00).

PC방을 가는데요. 턱이 너무 많고요. 턱이 너무 좁아서 갈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쉽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저희 같은 장애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단 턱이 있으면 힘들어요. 턱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외면을 할뿐더러 도와준다고 해도 요령을 몰라서 해매는 경우가 있어요(안00).

요즘은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다 있지만, 문이 고장 나서 손으로 힘들게 닫아야 될 때가 많아요. 무엇이든 고장 나면 수리를 빨리 해 주었음 좋겠고요. 경사를 안전성 있게 만들었음 좋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경사를 내려가다가 다칠 뻔했어요(이00).

②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성인이나 또래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장애 청소년들을 보면 신기한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속닥대며 비웃기도 하고, 장애 청소년의 행동을 흉내 내기도 하며, 장애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경향(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자신의 말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장애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우리 주변 이웃들은 아직도 장애인을 거리에서 마주치면 다정하 기보다는 신기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속닥속닥 거리면서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또, 한번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서 비웃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김00).

어떤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때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때 저를 사람으로서 무시하고, 제 자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안00).

③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E-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장애 청소년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 메일이나 음란물을 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들은 화가 나고 매우 불쾌했으며,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메일 확인을 하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무슨 편지가 와서 열어봤더니 19세 음란물이 왔어요. 그래서 닫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창이 줄줄이 나와서 그냥 꺼버린 적이 있어요. 그 때 심정이 조금 모욕감이 들었어요(안00).

몇 년 전에 바이러스가 걸려 음란물이 계속 뜬 적 있거든요. 처음에는 19세 표시로만 뜨더니 어느 날 부터인가 야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래 끄려고 하다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 보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참 불쾌해요(이00).

④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모든 장애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묘사를 불쌍하고 우울하고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묘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많은 장애인들이 몸은 불편해도 건강하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 부정적인 묘사를 함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에게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리 장애인들은 좋은 면이 나오기보단 학대받는 대상으로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병신이라고 욕설을 당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인격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묘사 되고 있어요. 이제는 학대받고, 욕설 당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긍정적으로 묘사 되었으면 해요(김00).

거의 모든 대중매체가 장애인은 불쌍하고 우울하고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럴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도 밝고 활발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대중매체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장애인이 어떤 모습인지 새로 봐 주셨음 해요(이00).

⑤ 기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주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특히, 학습적인 능력)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경험을 당한 장애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다리가 불편한 청소년에게 “다리병신”이라는 별명을 붙여 놀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 일반 청소년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청소년은 장애 청소년을 무조건 도와주려 하고, 장애 청소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자 이들의 도움을 거절할 때, 서로에 대한 오해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저는 학습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일반 청소년들과 차별을 받아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 으로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자신 역시 저를 일반 청소년들과는 몸이 불편할 뿐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학습적인 모든 능력이나 수준

을 동등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가 공부를 해서 뭐하나?” 혹은 “그런 놈이 그런 학교 가 봤자 야” 라는 말이요. 이게 차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으로 인식한다는 자체가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장애인이면 그 능력과 수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김00).

저는 다리가 좀 불편한데요. 그런 이유로 별명 하나가 붙여졌어요. 다리병신....저와 같이 놓고 있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다리병신하고 놀리니까 좋아?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리 좀 불편하다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잘 놀아주지 않습니다(박00).

계기가 되어 여성보호 단체에 있는 청소년 애들과 유럽에 간일이 있는데, 스스로 하려는 우리 학교 애들과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쪽 애들과 다름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해야 서로 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서 또 이 기회에 자립심을 키우려고 그런 것인데, 그 쪽에서는 자기 성의를 무시한다며... 우리가 자주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놔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이00).

(3) 장애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 교사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 일반 정상적인 친구의 차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친구의 무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 교사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장애를 다른 부분(예를 들어, 학습 능력 등)에도 적용하여 무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 청소년에게 심한 언어적 모욕감을 주는 등의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체육, 청소,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 청소년들은 장애 청소년에 대해 친구로서 대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대함으로써 장애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단체 처벌을 받을 때 일반 친구들의 눈치가 보여 교사에게 다른 친구보다 더 세계 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자기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 전 중간고사 때였어요. 제가 시험을 마치고 문제가 잘못 된 것 같아서 과목 선생님을 찾아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한테 아주 심하게 면박을 주시면서 너 똑바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보니 문제가 정말 틀렸었어요. 그 때 저는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인격모욕을 당한 거나 다름 없어요(김00).

4년 전에, 어떤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형이 변기 옆에 붙어있는 바를 잡고 일어서려다가 미끌어 져서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려면 잘 도와주지 “넌 이것도 못하냐”고 꾸짖으셨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이 정말 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심00).

제가 무슨 문제집을 사서 풀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네가 이런 거 풀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저도 충분히 노력하고, 전념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제 능력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 저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좀 자존심이 구겨졌어요(안00).

다른 친구들이 제가 없을 때 서로 속닥속닥 거려도 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면 집에 와서 괜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학교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가겠다고 둘러대고 집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나00).

제 친구들 중에 몸이 덜 불편한 친구들은요. 저를 귀찮아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뭐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바쁘다며 도망가 버리거나, 못 들은 채 해요. 그리고 무슨 게임을 해도 저를 재외시킬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럴 때면 그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기분이 들어요(김00).

친구들 중에 같은 장애인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소변이 급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 지금 바쁘다”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열 받았던 적이 있어요(심00).

(4) 장애 청소년이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

장애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자신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활동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

둘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의 보완: 전용버스나 콜택시
셋째,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홍보

넷째,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능력에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홍보

다섯째, 계단이나 턱과 같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수정

저를 아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저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신기하다는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건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우리와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반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서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김00).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용 전용버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서울에 장애인용 콜택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는데...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나00).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마디 할게요. 저희 동생은 6살이에요. 그런데 보통 6살과는 달리 장애인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저희 동생이 어려서부터 저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1년에 몇 번 만나는 사촌동생들도 커가는 과정에서부터 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요. 해서 생각했어요. 초등학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특수학교에 가서 자기또래의 아이들의 수업에 참관시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유적지나 놀이공원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것도 좋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공부하고, 도와주다 보면 장애인과 일반인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심00).

계단을 좀 없애고, 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턱이 있어도 좀 낮게 해 주세요. 계단이나 턱을 두는 건 저희를 그냥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턱을 넘을 때 할 수가 없어요. 그 때 다행이도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요령이 없어서 많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TV 프로그램 같은 여러 매체에서 간단한 요령을 광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안00).

지금도 인식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장애인도 무언가 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몸의 장애가 심할 뿐(학교, 사회생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장애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우선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래야 받아들여지기가 편할테니까요. 그 다음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강조 하는 것이..(이00).

3) 북한이탈 청소년

(1)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학교 성적을 이유로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 부모의 남녀 성 차별,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간섭,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기타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경험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공부 문제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남녀차별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두발에 대해 더 많은 간섭을 하였음). 또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야단이나 꾸중을 들었지만 심할 정도의 폭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모간의 사이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부모가 서로 다투게 될 경우 자녀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교 성적을 이유로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고 차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공부 문제로 친구나 형제와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모들은 일반적인 부모에 비해 자녀의 성적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성적 문제로 꾸중이나 야단을 덜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 부모가 성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 역시 놀면서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을 이유로 차별당한 적은 없어요. 공부 때문에 눈치가 보인 적은 많아요. 어릴 때는 안 그랬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많이 강조 하셨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

과 놀러 다닐 때면 부모님이 한마디씩 하시곤 했어요. “공부는 다 하고 놀러 다니는 거니?” 아니면 “그렇게 놀다가 공부 언제 하려 구?” 등 이었죠. 때문에 놀면서도 항상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부채질 하셨다는 게 더 맞는 거 같아요(임이).

저의 부모님은 성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사촌언니가 시험기간이라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엄마가 보시고 저한테 너도 공부 좀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조금 그랬죠. 저도 시험기간에는 밤새워서 공부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최00).

② 부모의 남녀 성차별

피면접자의 반 이상이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고 하였다. 세탁이나 집안일 같은 것을 여동생에게 시키며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늦은 귀가에 대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러면 되니”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차별을 하였다.

여동생이 있는데 종종 어머니가 차별하시긴 해요. 예를 들어 세탁이나 집안 청소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둘 다 할 일이 없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저보다는 어린 동생을 시키죠.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여자면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동생은 종종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불평하기도 해요(임이).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성차별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면 안되는 행동인걸 압니다. 하지만 나쁜 행동을 꾸짖을 때 꼭 “니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그러면 되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성차별을 안 하고 “밤 늦게까지 집에 안 오면 니가 걱정이 된다.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최00).

③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간섭

북한이탈 청소년의 두발에 대해 부모들은 많은 간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머리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평가(예를 들어, 단정치 못하다, 답답해 보인다 등)를 하며,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머리에 왁스를 바르거나 염색 또는 파머를 할 경우에 더욱 간섭을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머리 모양은 자기의 개성 표현인데 왜 부모가 간섭을 심하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피면접 대상인 거의 모든 청소년(장애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도 포함)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자녀의 복장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간섭을 하였는데, 두발만큼 심하게 간섭하지는 않았다. 자녀의 복장이 부모의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배꼽 티, 찢어진 청바지 등)에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 꿈이 헤어디자이너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튀는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왁스로 스타일 낸다든가 염색을 한 다든가 심지어 앞머리까지도... “자다 일어난 머리 같다, 양아치 같다. 답답해 보인다” 등등 조금 질릴 정도로 간섭합니다(최00).

복장은 별로 그렇게 간섭하진 않는데요. 찢어진 청바지나 배꼽티는 절대 못 입게 하세요. 그래서 전 그런 옷 못 입고 다녀요.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옷 입는 게 보기 안 좋으신 거 봐요(순00).

④ 부모의 폭언(고함, 욕설)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은 대개 자녀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부모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자녀들이 눈치 없는 행동을 할 때였다. 비록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끔은 폭언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자녀 역시 자신이 어떤 일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참 다양하죠. 동생과 다툰 때가 그렇구요. 어렸을 때는 맞아서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요, “넌 맞고 다니니? 뭘 잘한 게 있다고 물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내질 하겠니?” 등… 그리고 연락도 없이 아주 늦게 들어갈 때, 시간이나 돈 아까운줄 모르고 낭비할 때가 그래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허튼 짓 할 때도 한번씩 크게 혼나죠. 예를 들어 학교 숙제가 있는데 낮에는 실컷 나가 놀다가 잠 잘 시간이 되어서야 숙제 펴놓고 하면 말이에요(임이).

폭언은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 갈 때, 집 청소 안했을 때, 동생이랑 싸웠을 때, 이럴 때 화내시면서 (구실 못하는 년) 이런 욕 가끔 들어요(순이).

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부정적 영향

부모 간의 심각한 다툼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두 사람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부모간의 다툼은 집안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며 자녀에게 심리적 상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구와 놀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며, 집으로 돌아갈 때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쪽이 잘못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부모님들이 다툼이 되면 저희 가슴은 항상 콩알만 해져요. 심리가 불안하고 무슨 큰 일이 터지지 않을까 가슴 조리죠. “저렇게 다투시면 안 되는데” “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좀 사과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은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요. 서로 말도 잘 안하죠. 그러니 친구들과 놀아도 걱정이 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즉 부모님이 다투시는 때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심리적으로 매우 크게 타격을 받아요(임이).

아버지가 가끔 과음을 하시고 오셔서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말을 하시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캐물으면서 엄마와 옥신각신 싸우십니다. 그럴 때는 거의 술 깬 때까지 싸우다 보면 날

새고, 그러다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헛생각을 하면서 기분도 꿀꿀해 저요(0100).

⑥ 기타 가정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는 대개 아직 자녀를 어리게 생각하여 자녀의 의견이나 관여를 무시하거나 제지하며 자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가방이나 지갑을 뒤지거나 핸드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검색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문자 메시지 교환을 할 때도 누구와 어떤 내용을 교환하는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도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 하시는 거 같아요. 조언 수준을 넘어서 말이에요. 저희가 저희 문제에 관해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들어 주는 척 하시면서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또 할머니랑 어르신들이 모여서 집안일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저도 옆에서 듣다 보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발언을 하면 “어른들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너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뭘 그렇게 자세하게 들으려고 그러냐? 할 일이나 해라” 하면서 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세요(임이).

저희 아빠가 제 방에 가끔 들어오셔서 제 가방을 막 뒤져 보시구요. 가방에 있는 거 그거 뭐냐고 계속 캐물으세요. 그리고 제 지갑도 몰래 보시구요 제가 준비물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요 지갑에 있는 돈은 뭐냐고 하면서 그거 쓰라고 하세요. 제가 가끔 집에 핸드폰 놓고 가면 문자온 거 막 읽어보시고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사람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간섭이 좀 심하세요. 문자 보내고 있으면 누구랑 하냐고 해서 친구랑 한다고 하면 ‘친구누구?’ 이러시면서요. 또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갈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 누구랑 가냐? 몇 시에 들어 오냐?
이런 거 맨 날 물어 보시구요. 뭐~부모니까 물어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매일같이 물어보시니까 좀 스트레스 쌓여요(순00).*

(2) 북한이탈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지역의 시설,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 기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등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면접 내용의 분석 결과, 휴식 및 여가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 등 질적 측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서 조금은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에 전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에 대한 무시나 차별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①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지역의 시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이 있지만,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고,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원하는 음악회나 박물관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붐벼 여유롭게 관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이 있을 때 대개 동네에 있는 PC방이나 노래방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허나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종류도 많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 등이죠. 물론 박물관이나 음악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수가 적어요. 때문에 가보면 사람들로 붐벼요. 하고 싶어도 예약이 되어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운동하거나 노래방 가거나 게임방 가거나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요(임이).

우리 동네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딱 한번 학교 애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별로 특별히 이용할건 없더군요. 그냥 만화방이 있고 컴퓨터 있고, 그리고 우리 탈북청소년들을 모여가지고 하는 모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모이면 PC방이나 노래방 갑니다(변00).

②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무시 또는 모욕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와는 다른 집단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변의 반응은 자기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친구들은 간단한 호기심 말고는 별 다른 것은 없어요. 허나 이웃이나 성인들은 일정한 개념 같은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일차적으로 저희를 반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어른들과 얘기하다보면 “용케 왔네. 살만한 곳이었나?” “그 곳과 이곳은 완전히 다를 텐데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야” 하는 식이에요. 사실이나, 그 말투를 들어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차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대한 무지에서 그런 말투가 나오는 거 같아요(임이).

저흰 이웃들하고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북한사람들하고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내요. 그리고 제 또래 한국 친구들은 없고요. 제 주변에도 없고, 딱 한 명 있긴 한데, 먼 친척 되는 녀석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학교에선 제가 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어떤 모욕도 당한일은 없습니다(현00).

③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이버상의 음란물이나 음란 메일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겨 사이트를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냥 삭제한다고 하였다.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허나 나중에는 바로 삭제 해 버렸어요(임0).

이건 진짜 많이 받아봤습니다. 다음(한메일)메일로 제일 많이 와요. 며칠에 한번 씩 열어보면 온통 카페메일에 상업성 광고메일 음란성 메일로 꽉 차요. 처음엔 스팸메일 열어보고 사이트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니 모두 유로더군요. 그리고 그런 거 보는데 기분 같은 건 안 따집니다. 당연히 호기심 가죠(현00).

④ 대중매체의 편파적 묘사나 보도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보도를 편파적이고 부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탈북자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한 것만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파적 보도로 인해 대다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상이 좋게 않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것이 탈북뉴스인데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묘사할 때 보면 범죄자와 비슷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물론 당연한건 아니죠) 그리고 탈북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요인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 거 같아요(임0).

여기에 대해선, 음~ 대체로 보면 탈북자 뉴스 좋은 거 안 나오니까. 싸운 것 아니면 도적질 한 것, 왜 정착 잘하고 있는 분들의 기사는 안 내보내시는지... 솔직히 뉴스에서 탈북자 보도 나오면 짜증나요. 좋은 건 별로 안 나오고 나쁜 것만 많이 나오니까. 뉴스에 나오는 한두 사람 때문에 더군다나 안 좋게 보는 탈북자들 얼마나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탈북자들 나쁘게 몰고 가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언론 매체라고 봅니다(현00).

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

대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으며 육체적으로 힘들어했다. 다만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남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의 용어가 어려워(많은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음)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주유소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트 간에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최00).

주유소에서 6개월 정도하고 배달아르바이트 2년 정도 해보았어요. 피곤한 거 외에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이00).

모닝글로리 문구점에서 해보았어요. 꽤 큰 매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시절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제일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안내하려면 그들이 찾는 물건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모양은 아는데 이름을 들으면 생소했어요. 대부분 학교 준비물이었죠. 그리고 영어로 된 용어가 너무 많아 외우기가 힘들었어요(임0).

⑥ 기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과 무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에서도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으며, 미용실이나 카페 등에서도 무시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이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저희를 위해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많이 참여 했었는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봉사하는 분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가져갈까요?” “아니오. 그건 가져가지 말고 저거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 꽤 기분 나빴어요. 또 어떤 이들은 저희와 얘기하길 꺼려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갔는데, 봉사자 형, 누나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희를 위해 봉사하러 온 것 같은데 말도 안 걸어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말을 걸어도 간단히 대답만 하곤 해서 무안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같은 봉사자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원래 말수가 적은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임이).

중학교 때 운동을 좋아하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복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는 안 된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보았더니 이복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이00).

제 사촌 동생이 머리한다고 해서 미용실에 처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언니한테 제 동생이 북한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래 그럼 여기앉아~ 하면서 책도 안 가져다주더니, 여기 일반 애들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 할꺼라고 하니깐, 막 머리 모양 있는 책 가져다주면서 골라보라고 하고 완전 우리가 왔을 때랑은 다른 태도 보여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순00).

(3)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사로부터 약간의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북한에서 왔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꾸중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자기를 정말 위한다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 또는 선후배의 무시나 부당한 대우는 교사의 경우보다 명확하였다.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북한에서 온 주제에 핸드폰도 있네”, “북한 년 병신” 등 단지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제가 아는 형한테서 들은 건데요. 그 형이 말하기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느낀대요.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냉정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임이).

전 친구들이나 선후배한테 인권침해 받은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저희 집주변에 살거든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 다녔었는데요. 동생네 반 애들이 동생애가 선생님한테 칭찬 듣거나 하면 비웃으면서 “어머 웬일이니?”이러고요. 또 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요. 요즘 중학생들 핸드폰 없는 애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막 애한테 “북한에서 온 주제에 핸드폰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 어떻게 쓰시는 아냐?”고 막 그랬데요. 핸드폰 사용법이야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북한에서 오면 못 하나요? 또 원래 학교 조용히 다니는 애들도 있고 성격이 그래서 조용히 못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막 학교에서 좀만 떠들면 “북한에서 온 년이 깡친다”고 지나갈 때마다 “미친년” 또는 “북한 년 병신” 이런 욕들을 하면서 때려보거나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순00).

(4)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라는 인권 증진 방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자신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첫째, 남한 국민에게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인성교육의 실시
-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 또는 “탈북자”라는 명칭 사용 억제
-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인적 정보 노출 방지
- 다섯째, 남한 국민과 탈북자가 동포라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 여섯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실시
- 일곱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설명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 실시

처음으로 저희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해 온 환경이나 심리 등 말이죠. 저희를 도와주려 해도 저희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현재 한국 애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편견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면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먼저 우리를 알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임이).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무시되어있는 사회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면 저희는 혼동이 오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고려해야 할 거 같아요(임이).

현재 한국은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한국이 제일 내세울만한 것이죠. 허나 이것이 자칫 모든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저도 약간씩 그런 것들을 봐 왔구요. 우월하다는 개념 아래에는 하등하다는 개념이므로

차별이 당연히 따라다니겠죠. 이 부분을 한국인들이 현명하게 대하지 않으면 큰 갈등이 일어 날거예요. 제가 보기에 북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존심은 엄청 강하거든요. 저희가 가운데서 조절해야 하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보다는 힘이 약하죠. 강자의 입장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포로서 앞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돕는다는 걸 항상 인지했으면 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가 더 나아질지도 모르죠. 그때 가서 저희도 또한 남한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할거구요(임이).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적다고 봅니다. 저 역시 중국에서 5년 넘게 생활해 오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 받았습시다. 제 친구들도 많고요. 지금도 방황하는 애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대한 인성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한국사회에 나오자마자 인성교육이고 뭐고 먼저 외우고 쓰고 하는 것들, 정말 짜증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라고 하지만...(현00).

사회에 바라면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되면 다 북한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 땅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땅엔 아직도 우리 형제들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다시 북한 땅에 가야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나름대로의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지녔던 여러 가지의 습성들과 이 사회의 습성들로부터의 이질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탈북 청소년들이 말썽 많이 일으킨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좋은 면을 많이 알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탈북청소년들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른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한에 온 탈북청소년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자라서 통일한국이 오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욕심이지만, 어쩌면 미래를 대비하는 또 다른 사업이라고 봅니다(현00).

보통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북한이탈 주민’이라던가 ‘탈북자’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북에서 온 건 맞는데 이런 거 붙여서 부르면 저희는 기분 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왔으면 이젠 한국 사람인 거니까 그냥 일반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불러줬음 좋겠어요(순00).

야후에 저희 이름 치면 북한에서 왔다고 뜨는 거 빨리 없애 주었으면 좋겠어요. 북에서 온 게 광고 할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터넷에 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 사람들에게 북에서 왔다는 거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리기 시른 사람도 있고, 또 상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해요. 저희 의견도 생각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면 올리시고 올리는 거 바라지 않는다면 올리지 않는....올리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물어 봐서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순00).

저희 아빠를 봐도 그렇고 북한에서 왔고 나이도 있어서 일자리도 얻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일 자리 달라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어릴 때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배울 날이 많아서 괜찮지만, 어른들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거의 인생에 반을 살고 여기 와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처음 오면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설명회’라든지 등의 어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 같은 것도 아직 잘 볼 줄 모르시고요. 수능이 뭔지도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북에서 온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알려줘도 되지만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해가 잘 될 거 같아서요(순00).

3. 요약 및 시사점

근로,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 청소년들의 가정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예를 들어,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 경제적 문제, 본인의 가출 등)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또한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들의 상처나 고민에 대해서도 알아주기를 원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였다. 또 이들은 직장생활(아르바이트)을 하면서 계약 조건과 다른 일을 하거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욕설과 함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장애 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과 같이 가정에서, 학교 성적이나 공부를 이유로 형제나 또래와 비교당하고 차별을 받았으며,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도 부모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모로부터 욕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동정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은 지역사회의 시설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교사나 친구를 포함)으로부터 무시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대중매체 역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성적이나 공부 문제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야단이나 꾸중을 들었지만 심할 정도의 폭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모간의 사이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부모가 서로 다투게 될 경우 자녀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휴식 및 여가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 등 질적 측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무시나 차별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에 전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는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역사회, 학교(직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수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수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실시하여 같이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서 이들에 대해 이방인으로 느끼지 않고, 동질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

에 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일반인과 같이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소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의식 증진
소수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직장) 현장에서 소수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경험하는 차별 등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이들의 인권에 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소수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수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한 소수 청소년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 청소년의 경우,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근로 청소년이 지정하는 성인(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쉼터 지도교사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또 인권 침해를 당한 소수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나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에게 안전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소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및 보완
소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들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계단이나 턱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장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의 실시

소수 청소년들의 스스로에 대한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소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가정에서 자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예를 들어, 성적표 보는 방법,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곱째,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긍정적인 명칭으로 전환

소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많은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3.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최근 우리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쟁점화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를 비롯하여 두발 자유화에 대한 요구, 체벌반대, 0교시 폐지, 학교 내에서의 종교 자유화 선언 등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열거한 청소년인권의 쟁점 사항 중에서 선거권 연령 문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은 주로 학교와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역은 반드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영역 속에서의 청소년 삶 또한 커다란 비중으로 존재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빠른 산업화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의 삶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의 삶을 포괄하는 청소년으로 그 지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학교생활 영역에 편중된 것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으로써의 신분이 주로 학교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쟁점화 시켰거나, 학업과 관련한 인권 침해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자녀에 대한 부모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자녀들이 일차적으로 시민으로써의 사회화 과정을 학습, 경험하는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학습 받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인권 의식은 비록 그것이 인권교육의 명제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지위와 역할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매우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에 놓고 가정을 바라다보면 학교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

는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 속에 잔존하고 있는 유교 사상과 이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위치를 부모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욱이 성차별, 학력비교, 언어폭력, 체벌 등의 입체적 인권 침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공간이 가정이기도 하다. 오히려, 학교나 지역사회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경험하는 자녀들의 인권의식이 이러한 문제를 지각해 내지 못하거나 온정적 가족주의에 희석되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혼,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를 맞이한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서비스망이 미흡하여 더욱 그렇다. 가정생활 속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가정 내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욕설과 체벌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현시적 문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층의 비행 예방 및 범죄 감소, 풍부한 인성 경험과 긍정적 사회활동 전개, 그리고 학업성취 향상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는 최근 들어 가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한 부모들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을 확장하는 것에 지극히 부정적이다. 모두가 청소년층의 학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생활 범위를 규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인권 침해는 어떤 영역보다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호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역사회차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의 폭력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여 결국 청소년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보호권이 미약하다. 또한 참여권의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유유서의 풍습은 중요한 우리사회의 질

서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발언권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른의 참여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소년의 몫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어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와 비교할 때 소수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우리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라는 지위와 함께 소수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제한적 지원이 그동안 일반 청소년에게 집중되었던 경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은 순수 근로 청소년의 비율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학업부적응 및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층이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 또는 소수이지만 전업 근로자 형태의 근로 청소년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근로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에서 구체적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잘못된 성인들의 인식과 편견 등이 이의 집행 과정에서 근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보다 성인 대상의 인권 교육이 더욱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장이 소수자 및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장애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용성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본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의 주류층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관용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법·제도의 향상성과 실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수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사안은 소수,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반드시 성인층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인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층 내부에서조차 발생된다는 점이다. 성, 계층, 지역, 학령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할되고 있는 청소년층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 학교, 지역사회생활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종합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관계에 있다. 학교의 0교시 수업이 계속되는 한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가출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청소년인권의 개념을 상위에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활영역과 환경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배치하는 구조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몇 가지 주요 사안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청소년의 학력, 또는 대입시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성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가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되기 보다는 주변적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욱 문제이다.

셋째, ‘인권’은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누구나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갖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태도 및 결정 여하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이 좌우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는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인들이 시혜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소수 청소년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 의한 인권침해를 종종 경험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조정, 두발자유, 0교시 폐지 등과 같은 사안

은 이 사회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또래집단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수 청소년을 위한 인권 신장 노력과 함께 모든 청소년층에 초점을 맞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불편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인권 또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 또는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접근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그리고 소수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성인 간의 세대 이해(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국친사상은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공감에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성인 세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캠프,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방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폭언, 차별 등은 흔히 자녀교육 혹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청소년 자녀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기에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폭언이나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정보 통신분야의 청소년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은 원하지 않는 음란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는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정보 통신분야의 청소년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원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하위집단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여학생, 인문계고등학생,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청소년, 그리고 서울거주 청소년들이었다. 특히 서울거주 청소년들은 광역시, 중소도시, 혹은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유해업소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히, 서울 소재 학원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인권교육과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내의 청소년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교생활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항 혹은 고충 사항은 탈의실이 없는 것, 겨울철 화장실 온수시설이 없는 것, 두발과 교복에 대한 제한, 선생님께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것, 학교급식 품질이 낮은 것, 그리고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이 없는 것 등으로 시설 미비로 인한 고충사항이 가장 컸다. 시설미비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외한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 그리고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의 문제는 예산 투자 없이 학생, 교사,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중재자로서의 청소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여섯째,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 하위 집단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성적과 관련한 체벌과 차별의 인권침해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그리고, 학교의 기본적 시설의 미비, 두발과 교복 자율화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한 시설 미비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한편, 거주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시나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시설관련, 체벌관련, 그리고 학습의 선택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따라서 성, 계층, 지역, 학령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할되고 있는 청소년층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소수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 소수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실시하여 같이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서 이들에 대해 이방인으로 느끼지 않고, 동질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

에 청소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일반인과 같이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소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의식 증진

소수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직장) 현장에서 소수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경험하는 차별 등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이들의 인권에 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소수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소수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한 소수 청소년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 청소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청소년이 지정하는 성인(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쉼터 지도교사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또 인권 침해를 당한 소수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나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에게 안전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소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및 보완

소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들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계단이나 턱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장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의 실시

소수 청소년들의 스스로에 대한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소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가정에서 자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예를 들어, 성적표 보는 방법,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긍정적인 명칭으로 전환

소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근로 청소년,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많은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3.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

□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7가지

1.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2. 외모나 두발에 신경 쓰는 자녀를 아름답게 보아줍시다.
3. 자녀를 꾸짖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4.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5. 자녀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6.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모님의 수치나 실패로 여기지 맙시다.
7. 가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1.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는 당신 자녀의 마음을 초라하게 하고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비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맹목적인 태도는 자녀를 이기적이고, 유아적으로 만듭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의 삶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부모의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노력을 합시다.

2. 외모나 두발에 신경 쓰는 자녀를 아름답게 보아줍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일생 중 가장 자기를 가꾸고 싶을 때입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반응에 자녀들은 반항심이 생깁니다.

3. 자녀를 꾸짖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부모의 폭언은 자녀를 멍들게 하고 평생 응어리로 남습니다. 또한 부모의 폭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에 무감각해지고 나름대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할 때의 바른 훈육도 필요하지만, 자녀가 바른 행동을 하거나 보다 개선된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역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4.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당신은 자녀가 인간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인정해 줍시다. 자녀도 부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5. 자녀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당신은 자녀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다려 줍시다.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길라잡이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여유를 가집시다. 자녀는 이제 어른애가 아닙니다.

6.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모님의 수치나 실패로 여기지 맙시다.

정직한 사과는 자녀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부모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수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부모의 모습은 추합니다. 권위적으로만 느껴졌던 부모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멋지게 늙어가는, 합리적인 어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가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에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가족공동 대화의 장을 만들고, 생활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공부를 이유로 가족의 일을 면해주거나 단지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을 따르거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가족에서 자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7가지

1. 청소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교내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3. 수업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형태, 신체적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체벌이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5.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회 임원 선출은 차별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6. 생활지도시 감독과 규제 보다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도록 합니다.
7. 학교의 시설 배치와 이용에 있어 학년 또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1. 청소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청소년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교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인권이 자신의 인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교내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만약 다수의 청소년들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한 명의 청소년이 또래들로부터 소외당하여 불행해 진다면 그 교사는 평생 동안 마음이 아플 것 입니다. 교사는 항상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수업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형태, 신체적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청소년들은 각기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한 부모,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저항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4. 체벌이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교사는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여 비속어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들 사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벌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벌을 금해야 하며 시험성적이나 징계내용, 그리고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 개인정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회 임원 선출은 차별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을 학교 구성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 임원 선출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성별, 가정환경 등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6. 생활지도시 감독과 규제 보다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면서부터 학생부와 선도 학생들에게 두발, 복장 등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복장 지도 등 생활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합시다.

7. 학교의 시설 배치와 이용에 있어 학년 또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저학년 청소년들은 도서실, 매점 및 식당 이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생활이 과도한 위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등한 원칙을 마련하거나 저학년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규칙 등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녀 공학이 보편화 되었지만 화장실을 비롯한 학교 시설은 이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학생 휴게실, 생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 합시다.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7가지

1.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합니다.
2.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지 맙시다.
3.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4. 청소년이 원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보장 합니다.
5.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운동을 전개합니다.
6.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7. 청소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1.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2. 지역사회에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지 맙시다.
학업부적응,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내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과 지원이 이들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3.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최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의 청소년들은 학교, 학원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는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4. 청소년이 원하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용돈 마련과 다양한 사회체험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학업부적응을 비롯한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거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의 영역을 개발·확대하고, 청소년들이 근로과정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맙시다.

5.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운동을 전개합니다.

청소년은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및 학대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계층입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유해환경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차원의 지정운동이 병행될 때 더 큰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6.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역적, 경제적, 성(性)적 형평성 및 실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연계된 청소년 친화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표현기회 제공 및 창의성 함양이 담보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토대로 작용합니다.

7. 청소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보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이자 문화적 권리로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보소외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도덕성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 선택권에 대한 책임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부차별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음란성 스팸메일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참 고 문 헌

< 국내 자료 >

- 길은배 외(200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길은배(2003). 가정,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 2003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교재. 문화관광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순(1999). 충남청소년인권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pp 51-58).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용자(1998). 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2호, pp. 5-19.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1998).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숙·김정래·고전(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은숙(1998).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우리교육, 11월호. pp. 76-83
- 문성호(2004).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 소수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4). 한국 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희망만들기.
- 박창남·심희기·윤찬영·이찬진(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백승환(1999). 학교폭력과 학생의 인권신장. 학생인권 신장방안 모색. 학생인권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외편(2001).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서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 성정숙(1998).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스기하라 야스오 저·석인선 역(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 안동현(199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과 과제.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 아동권리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오름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명준·류태적·정우탁·임현묵(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용교 외(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인간과 복지.
- 이용교 외(200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 조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이용교 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김영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연·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 정희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명숙(2005). 탈북청소년복지 현황과 과제. 청소년 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주희중 외(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 천정웅·김영자·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외국 자료 >

- ARRC(1995). Human Right Education: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Green Frog Publishing.
-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 Brownie, I. (ed.)(1994). Basic Documents on Human Rights. 3rd ed. Oxford: Clarendon.
- Freeman, M and Veerman, P.(1992).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Dortrecht: Martinus Nijhoff.
- Hugh Matthews(2001). Citizenship, youth councils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4, No. 3. pp. 299-318.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ony.
- UNESCO(1993).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ada.
- Winter. M(1995). Children as Fellow Citizens. New York : Radcliffe Medical Press Oxford.
- Wringe, C. A.(1981). Children's Rights. London: Routledge & Kegan

부 록

전국 청소년인권 의식 조사 설문지

전국 청소년인권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 및 고충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 9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10층)

<http://www.youthnet.re.kr>

연구책임자 : 길은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02-2188-8843(연구실) / 011-246-4013(핸드폰)

I.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평소 가정생활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를, 오른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솔직하게 v표해 주십시오.

문 항	질 문 내 용	나는 개인적으로 자주 경험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 할 때 나의 학력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의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시고 차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성적이 나쁘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마음 편히 놀거나 쉴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에게 참기 어려운 폭언(고함, 욕설 등)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을 사귄 때 상대 친구의 성적 및 집안 환경 등을 주요한 조건으로 고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방과 후나 휴일에 외출할 때 나의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등교 시간에 쫓기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것은 나의 학교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집안 형편상 부모님께서 학교에 내야할 돈을 제때 주지 못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께서 내 용돈을 보관하고 계시면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안일이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평소 지역사회 생활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를, 오른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솔직하게 v표해 주십시오.

문 항	질 문 내 용	나는 개인적으로 자주 경험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과 공간이 지역사회에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들은 대부분 나에게 반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차별이 더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언어적 폭력(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더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학원에서 밤 12시 이후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방과 후에 학원을 여러 곳 다니므로 휴식 및 여가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평소 인권침해 및 고민, 애로사항 등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할 기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방과 후 저녁 시간에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 대한 양보 등의 문제로 주변의 눈치가 보여 빈자리가 생겨도 앉기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아르바이트시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하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약속된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이나 스팸메일을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뉴스, 드라마 등)는 청소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유해업소 주인은 청소년인줄 알면서 유해업소(술집, 비디오감상실, 청소년 출입이 허용 안되는 노래연습장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를, 오른쪽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솔직하게 v표해 주십시오.

문 항	질 문 내 용	나는 개인적으로 자주 경험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겨울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을 씻거나 세면을 하기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플 때 양호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 등을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계절의 변화에 따른 교복 종류(조끼, 치마, 바지, 외투 등)와 디자인 등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교복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과 같은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이동시간 등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압수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가방, 소지품 등의 검사를 자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외모나 신체적 특징(몸무게, 키 등)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에서 성적을 이유로 차별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주 체벌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에서 체벌을 받을 때 손으로 나의 얼굴 또는 기타 신체적 부위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은 자주 인신공격성 폭언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내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생자치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내 급식은 가격에 비하여 메뉴 및 반찬이 다양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에서 성적 및 친구문제 등의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상담할 선생님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학급 또는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학급 임원 및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권리(인권)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평소 청소년 권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그저 그렇다
4. 관심이 있는 편이다
5. 매우 관심이 많다

<문 2>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2. 약간 침해당하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잘 보장받고 있다
5.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문 3>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 또는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골라**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이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4> 귀하의 성별은 ?

1. 남 자

2. 여 자

<문 5>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

	1학년	2학년	3학년
1) 중학교	①	②	③
2) 인문계 고등학교(특목고 포함)	①	②	③
3) 실업계 고등학교	①	②	③

<문 6> 학교성적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상위 20% 이내	상위 21-40%	상위 41-60%	상위 61-80%	상위 81% 이하
학교 성적	①	②	③	④	⑤

<문 7> 귀하께서 살고 있는 곳(자기 집이 있는 곳 기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서울
2. 광역시
3. 중소 도시(도청소재지나 시)
4. 군·읍면

<문 8>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1. 두 분 모두 계시다
2. 아버님만 계시다
3. 어머님만 계시다
4. 두 분 모두 안 계시다

<문 9>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응답.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문 10>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있다면 자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중간”이다

<문 11>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못 사는 편 |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
| 3. 중간 수준 |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
| 5. 매우 잘 사는 편 | |

<문 12> 현재 학생회나 학급회 임원(반장, 부반장, 부장)을 맡고 있습니까 ?

- | | |
|------|--------|
| 1. 예 | 2. 아니오 |
|------|--------|

<문 13>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교내 동아리 활동	①	②
2) 학교밖 동아리 활동	①	②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강명숙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담당관
박금렬 청소년위원회 · 참여개발팀장
윤보영 청소년위원회 · 사무관
이종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경영혁신기획단장
전성민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 소장

◆ ‘청소년인권 보장 수칙 21가지’ 수립 위원 ◆

<가정생활 분과>

고성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서울협의회본부장 ·
경희대 아동가족학부 겸임교수
조희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대구대학교 사회과
학대학 가정복지학과 교수
이미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학교생활 분과>

홍생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
구실장
한만중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대변인
박재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지역사회생활 분과>

전성민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박복선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부센터장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연구보고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26일

발 행 2005년 12월 30일

발행처 **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발행인 최영희

전 화 (02) 2100-8574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36-525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ISBN 89-7816-593-1